

2025년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025. 11.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 I 행사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27일 (목) 15:00-17:00
- 장소 : 대전노동권익센터 교육실

<b>작 장</b>	<b>박지현</b>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센터장
<b>발제자</b>	<b>이찬우</b>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 <b>■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b>
<b>토론자</b>	<b>김 설</b>   청년유니온 위원장 <b>김미선</b>   보험설계사 <b>이산하</b>   영상편집/제작 <b>이영선</b>   프리랜서 강사 <b>이영진</b>   MC_가전제품렌탈관리 <b>정경희</b>   연극배우 <b>주승훈</b>   사진작가, 행사 기획/진행 <b>전철호</b>   대전차별없는일터지원단 소장(노발재단 총청지사)

# II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5:00~15:05	05'	개회	사회자
15:05~15:10	05'	인사말 및 내빈소개	센터장
15:10~15:30	20'	실태조사 결과보고	발제자
15:30~16:40	70'	지정토론	토론자
16:40~16:55	15'	종합토론 및 정리	좌장
16:55~17:00	05'	폐회 및 기념촬영	사회자



---

##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실현을 바라며...

대전지역 프리랜서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528명의 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접 만나면서 노동환경실태를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IT, 문화예술, 미디어, 관광, 체육, 연구상담, 배달, 방문서비스, 재무회계,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직업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 3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청년일자리, 지역을 떠나는 청년문제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평생직장이나 하나의 일자리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확대되면서 프리랜서 노동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7명 중 1명은 프리랜서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를 계기로 대전지역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여론형성과 대전시의 지원정책마련에 소중한 첫발을 떤다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노동자성 인정, 상병수당, 유급병가 등 아프면 쉴 권리,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공정 거래근절, 전문역량강화 지원, 심리적·법률적 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과 세부적인 실천 방도들이 토론되었으면 합니다.

대전지역 프리랜서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책임지고 연구 책임을 맡아주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찬우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조사원 모집과 설문조사,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 발간까지 굵은일 도맡아 해주신 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 나규정 팀장과 이용주 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대전지역 프리랜서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발간으로 대전지역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실현을 위한 활동을 높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대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김윤희**

---

##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마치며

프리랜서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술, 교육, 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리랜서는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권리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전노동권익센터의 프리랜서 노동실태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정책과 제도의 언어로 풀어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드러난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 계약의 일방성, 사회보험 적용의 한계, 플랫폼 종속성 등은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지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프리랜서에게 안정적인 일터와 예측 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가 프리랜서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나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 자료가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센터가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당사자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나 공간이 없어서 대부분 찾집에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이고 준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해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프리랜서 노동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와 편집, 조사 과정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재를 알리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박지현**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 연구

2025. 11.

연구수행기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책임 : 이 찬 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

연구진 : 남 우 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 목 차 〉

<b>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b> .....	<b>3</b>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6
3. 보고서 구성 .....	8
<b>2장 프리랜서(독립노동자)의 개념과 범위</b> .....	<b>11</b>
1. 프리랜서의 개념과 범위 .....	11
2. 프리랜서 규모 추산의 방법론적 접근 .....	19
<b>3장 국내외 프리랜서 정책 사례</b> .....	<b>28</b>
1. 해외 법·제도 및 정책 사례 .....	28
2. 국내 법·제도 및 정책 사례 .....	33
<b>4장 설문조사 분석</b> .....	<b>39</b>
1. 설문조사 개요 .....	39
2.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39
3. 경력 및 계약구조 .....	45
4. 소득과 노동시간 .....	48
5. 노동과정과 건강 .....	53
6. 노동조건 만족도와 정책제안 .....	60
7. 대전지역의 노동환경과 이동노동자 쉼터 .....	64
8. 자유의견 .....	67

<b>5장 심층면접 분석</b> .....	<b>77</b>
1. 직종별 진입 동기 및 활동 현황 .....	78
2. 직종별 계약 및 업무 과정의 구조적 특성 .....	81
3. 프리랜서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들 .....	84
4. 소결: 정책과제 .....	87
<b>6장 결론: 정책 과제와 함의</b> .....	<b>93</b>
1. 대전지역 프리랜서 노동실태 핵심 쟁점 .....	93
2. 프리랜서 정책 과제 제언 .....	95
<b>〈참고문헌〉</b> .....	<b>103</b>
<b>〈실태조사 설문지〉</b> .....	<b>104</b>
<b>〈참고문헌〉</b> .....	<b>103</b>
<b>〈토론문〉</b> .....	<b>113</b>
1. 김설 청년유니온 .....	115
2. 김미선 보험설계사 .....	123
3. 이산하 영상 제작(편집) .....	127
4. 이영선 프리랜서 강사 .....	133
5. 이영진 생활가전 렌탈 방문점검원 .....	139
6. 정경희 프리랜서 예술가 .....	145
7. 주승훈 사진작가(행사 기획/진행) .....	151
<b>〈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b> .....	<b>157</b>
<b>〈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경과보고〉</b> .....	<b>183</b>

## 〈표 차례〉

〈표 2-1〉 광역지자체의 프리랜서 지원 조례 .....	12
〈표 2-2〉 국가별 프리랜서의 정의 .....	15
〈표 2-3〉 국내 통계에서 프리랜서 추정 범주 .....	21
〈표 2-4〉 근로환경조사에서 대전지역의 프리랜서(주관적) 규모(가중치 적용) .....	21
〈표 4-1〉 성별 .....	40
〈표 4-2〉 종사 분야에 따른 성별 분포 .....	40
〈표 4-3〉 연령대 .....	41
〈표 4-4〉 종사 분야에 따른 연령대 분포 .....	41
〈표 4-5〉 학력 .....	42
〈표 4-6〉 종사 분야 .....	42
〈표 4-7〉 거주지역 .....	43
〈표 4-8〉 활동지역 .....	43
〈표 4-9〉 본업 여부 .....	44
〈표 4-10〉 이전 경제활동 경험 .....	44
〈표 4-11〉 종사기간 .....	45
〈표 4-12〉 종사 분야에 따른 연령대 분포 .....	45
〈표 4-13〉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 .....	46
〈표 4-14〉 계약 방식 .....	47
〈표 4-15〉 계약시 계약내용의 명확성 .....	47
〈표 4-16〉 소득과 지출 .....	48
〈표 4-17〉 성별에 따른 소득과 지출 .....	48
〈표 4-18〉 종사분야에 따른 소득과 지출 .....	49
〈표 4-19〉 월 소득의 변동폭 .....	50
〈표 4-20〉 일에 대한 보상 방식 .....	50
〈표 4-21〉 일에 대한 보상 방식 .....	51
〈표 4-22〉 사회보험 가입여부 .....	51
〈표 4-23〉 근무시간 .....	52
〈표 4-24〉 종사분야별 근무시간 .....	52
〈표 4-25〉 근무장소(다중응답) .....	53
〈표 4-26〉 일감의 확보 방식 .....	54
〈표 4-27〉 사용자의 통제 및 지시 여부 .....	54
〈표 4-28〉 숙련에 대한 보상 여부 .....	55
〈표 4-29〉 부당사례 .....	55
〈표 4-30〉 부당사례 대응방식 .....	56

〈표 4-31〉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 .....	57
〈표 4-32〉 업무과정에서의 위험노출 .....	57
〈표 4-33〉 종사분야별 휴가 및 병가 활용 .....	58
〈표 4-34〉 종사분야별 일의 특성과 정체성(7점만점) .....	59
〈표 4-35〉 노동조건 만족도 (7점만점) .....	60
〈표 4-36〉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어려움 점(복수응답) .....	61
〈표 4-37〉 개선방안(복수응답) .....	62
〈표 4-38〉 사회적 변화가 일에 미칠 영향 (7점만점) .....	63
〈표 4-39〉 프리랜서로서 대전에 대한 평가 (7점만점) .....	64
〈표 4-40〉 쉼터 이용 경험 .....	65
〈표 4-41〉 쉼터 이용의 제한 사항(복수응답) .....	65
〈표 4-42〉 쉼터에서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복수응답) .....	66
〈표 4-43〉 자유의견 .....	69
〈표 5-1〉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	77

# 01

##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제1장

##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전일제 정규직 중심의 고용 형태는 점차 유연하고 간헐적인 '일(Task)' 중심의 형태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적 노동 형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기존 법제도가 새로운 고용/계약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모호해지면서 임금 체불, 계약의 일방적 변경, 낮은 보수 등 불공정 거래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소득 불안정성과 직업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프리랜서 일자리의 감소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 1)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과업화(Task-ification) 현상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 설계된 '직무(job)'라는 단위로 묶여 있었다. 직무는 유사한 작업 활동인 '과업(task)'의 묶음으로 정의되며, 이는 곧 조직의 본질인 '부서화(departmentalization)'의 핵심이었다. 즉, 노동자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고, 부서라는 물리적 공간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플랫폼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러한 전통적 직무 중심의 노동 구조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노동이 독립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세부적인 작업 활동인 '과업' 단위로 분해되고, 이 과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별적으로 증개되거나 거래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과거 재즈 공연장에서 즉석으로 섭외한 연주자(gig)처럼 필요한 순간에만 계약하는 간헐적이고 프로젝트 중심적인 노동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의 과업화 현상은 이미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2024년 7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23.6%에 달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인간의 노동은 더욱 유연하고 프로젝트 중심적인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의 과업화가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직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인적 종속성이 핵심적이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을 '과업'으로 분할/관리하는 것이 수월해지면서 노동자는 다수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전속성 개념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랫폼을 통해 보수 등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위치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되는 경제적 종속성과 시스템적 지휘·감독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제공 방식의 근본적인 재편은 기존 노동법이 상정한 '전일제-종속 노동자' 모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히 계약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제공 방식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 2) 제도적 사각지대와 비전형적 계약방식의 확산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적 고용 형태는 기존의 고용 관계와 달리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금근로자를 전제로 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연차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 쉬우며,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편법적 계약 방식이 바로 3.3% 원천징수 계약이다.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노동법상 의무(4대 보험, 퇴직금, 연차 수당 등)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종속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3.3% 계약을 강요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위법을 합법이라 칭하는 무책임한 관행을 낳고, 심지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위한 행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전략적 위장이다. 위장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불공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노동자 개인에게 막대한 법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처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비전형적 계약 방식의 확산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개인의 법적 투쟁에 의존하게 만들며, 이는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불공정성을 야기하게 된다.

## 3) 자동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노동 환경의 악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은 프리랜서 시장에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며 노동 환경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프리랜서 직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AI가 사내 초급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유사한 초급 기술을 가진 외부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가 단순히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을 과업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기존의 저숙련 프리랜서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반면, AI의 결과물을 관리·감독하고 고도의 판단을 내리는 보완형 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프리랜서 시장 내부의 기술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AI 활용 능력이 높은 고숙련 프리랜서는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저숙련 프리랜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경고음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적 양극화는 프리랜서 시장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단순 직업 훈련이 아닌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문제 해결, 고도의 판단, 윤리)을 교육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처럼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현행 노동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소득 불안정,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거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sup>1)</sup> 대한민국 비임금노동자 약 847만 명 중 98.6%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가짜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4대 보험, 퇴직금 등)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자 오분류는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할 노동자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단순한 프리랜서 개념을 넘어 '진짜 프리랜서'와 '가짜 프리랜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정책적 접근을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전을 비롯한 지역 차원에서의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 모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애초에 프리랜서 개념의 모호성과 그 모집단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에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지원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비록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대전 지역의 프리랜서(독립노동자)의 실태를 파

---

1) 세계일보 2024년 10월 25일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25506900>

악하고, 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비임금노동자들을 자율성이 보장되는 '진짜 프리랜서'와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가짜 프리랜서'를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 지역 프리랜서의 노동 실태를 담은 설문조사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의 학술 연구 및 법률·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공식적인 프리랜서 규모 통계가 부재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명시함으로써 보고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미비한 통계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조사의 범위는 대전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독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모집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지표가 한정되는 관계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연구목적상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한다는 표본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① 프리랜서 노동 환경 및 실태 파악

지자체 차원에서 프리랜서의 규모,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득, 노동 시간, 계약 실태 등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조명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 ② 사실상 노동자에 가까운 위장 프리랜서 추정 논의

법적, 사회적 쟁점의 중심에 있는 '위장 프리랜서'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규모를 추정한다.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실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이 직면한 법적, 사회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 ③ 지역의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언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노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서론에 이어 다음과 같은 논리적 흐름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프리랜서(독립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 프리랜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노동의 과업화, 제도적 사각지대, 그리고 자동화로 노동조건 악화 등을 논한다. 3장에서는 국내외 프리랜서 정책 및 제도 사례들을 정리한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통계 자료와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지역의 프리랜서의 실태와 노동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목차구성

1.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2. 프리랜서(독립노동자)의 개념과 범위
3. 국내외 프리랜서 정책 사례
4. 설문조사 분석(설문조사)
5. 심층면접 분석
6. 결론: 정책 과제와 함의

# 02

## 프리랜서(독립노동자)의 개념과 범위





# 제2장

## 프리랜서(독립노동자)의 개념과 범위

### 1. 프리랜서의 개념과 범위

프리랜서(freelancer)라는 용어는 기록상 1820년 영국에서 출간된 Walter Scott의 'Ivanhoe'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소설에서도 중세시대의 '자유로운 창(Free Lances)'을 가진 용병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이후 이 단어가 대중화되면서 오늘날에는 특정한 고용주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해당 용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다수 국가에서 프리랜서는 법률이나 공식 통계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 1) 국내

국내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프리랜서를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법적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법적 정의의 부재는 프리랜서가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와 자율적 사업 주체인 '자영업자' 사이의 모호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프리랜서들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출발점이 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명확한 정의나 법률은 없지만, 지자체들은 프리랜서 조례를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근로기

2)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freelance>

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이되, '피고용자 없이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은 유사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표 2-1〉 광역지자체의 프리랜서 지원 조례

지역	조례명	프리랜서 정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경기도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충청남도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전라남도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경상북도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경상남도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및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

## 2) 해외

이러한 프리랜서의 개념의 정의 부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법적 및 통계적 지위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미국

프리랜서를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 법률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용어가 프리랜서를 통칭한다. 미국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독립계약자, 독립컨설턴트, 프리랜서'를 함께 조사하여 규모를 추계하며, 2005년에는 독립계약자가 전체 취업자의 7.4%인 1,03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 ② 영국

법률적으로 합의된 프리랜서 정의는 없지만, 정부(BIS)는 프리랜서를 '자영업자(self-employed)'로서의 고용상 지위를 가진 컨설턴트, 청부업자 등으로 간주한다. 자영업자 지위 때문에 이들은 '근로자(workers)'에게 폭넓게 보장되는 고용 관련 권리(employment rights)가 대부분 부여되지 않는다.

## ③ 독일

'자유직업인(Freie Berufler)'이라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개념이 존재한다. 독일의 파트너십법은 자유직업을 "특별한 직업적 특성 또는 창조적 재능을 기반으로... 개인적이고 책임감 있는 독립 콘텐츠를 창출하는 직업"으로 정의하며, 의사, 변호사, 건축가, 언론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④ 프랑스

프리랜서라는 용어 대신 '독립노동자(travailleur indépendant)'라는 독자적인 정의와 기준을 사용한다. 사회보장 관점에서는 자유직업인(profession libéral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프리랜서'라는 용어 자체보다 그들이 속한 법적/통계적 지위(예: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자유직업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자유직업인'과 같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개념을 마련한 국가는 프리랜서의 사회보장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다만, 여기서 언급되는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자발적 프리랜서를 범주로 하고 있으나, 오늘날 프리랜서에는 본래는 직접고용이 되어야 했을 오분류된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가짜프리랜서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칫 선부르게 제 3지위로서 프리랜서를 범주화할 경우, 오분류된 근로자들의 지위를 인정해버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오분류 문제의 해소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표 2-2〉 국가별 프리랜서의 정의

국가	통용 용어	법적/제도적 지위	정의의 특징
미국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법률상 명확한 정의는 없음. 연방 법률의 독립계약자 개념 사용.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범주에 포함하여 추계.
영국	프리랜서 (freelancer)	정부(BIS) 기준상 자영업자 (self-employed). 고용 관련 권 리 제한.	컨설턴트, 청부업자 등 계약 유형 에 속함.
독일	자유직업인 (Freie Berufler)	법률적으로 명시된 개념.	특별한 직업적 특성 또는 창조적 재능 기반. 개인적, 책임감 있는 독립 콘텐츠 창출.
프랑스	독립노동자 (travailleur indépendant)	법적·통계적 용어로 독립노동자 사용	작업 명령을 내리는 단일한 사람 과 종속관계가 없는 사람.

### 3) 유사한 개념들

프리랜서는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 '계약근로자(contract worker)', '자유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거나 그 범주가 중복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긱(gig)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기술 발전과 연계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독립노동자라는 광범위한 범주 안에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되는 관계를 형성한다.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형태로 특고 종사자의 노동과정은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 등 상업적 계약을 통해 관계가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특고 종사자의 오분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프리랜서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지위를 갖는 개념으로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보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는 프리랜서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특정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직종에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정희·박경하(2016)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짜 자영업자의 조건을 설정하

여, 자영업자 중 가짜 자영업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의 통계발표에서 가짜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과소추정되었음을 밝힌바 있다.

정흥준·장희은(2018)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고노동자의 규모를 샘플 조사를 통해 추정했다. 특고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분포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체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구분한 후 임금노동자 중 진성 임금노동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특고 종사자를 구분하였고, 전체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구분한 후 임금노동자 중 진성 임금노동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특고 종사자를 구분하였다. 또한 비임금노동자 중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통해 특고 종사자를 구분하였으며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인들 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진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를 제외하는 ‘잔여적 방식’을 활용하여 ‘특고 종사자+새로운 유형’을 구분하였다.

## ② 플랫폼노동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감의 증계 역시 급격하게 디지털화되었으며, 이를 증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은 단순히 일감의 증개를 넘어, 위치정보 기술과 알고리즘 등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관리/통제를 수행하는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들 역시 모호한 고용관계로 인해 그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규모 추정은 김준영 외(2019)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체 취업자 대비 1.7%에 해당하는 약 469,000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존재함을 밝혔고, 최초로 플랫폼 노동의 전국적 규모를 추정했다는 의의가 있음. 이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주기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데이터와 같은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한 규모추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존재하는데, 행정통계는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표본설계나 설문을 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③ 가짜 3.3 노동자

박영삼(2024)은 '3.3% 사업소득세' 방식의 근로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통계와 국세통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짜 3.3 노동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 임금노동자가 노무제공자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개인사업자로 일종의 위장계약을 맺는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권력적 위계와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당장의 '실수령액'을 높인다는 명분 등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고용통계만으로는 이러한 편법적인 계약을 제대로 포착이 어렵다.

### ④ 독립 노동자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는 조직이나 동료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형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Institute)는 2016년에 프리랜서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영업자의 자격으로 일하는 다양한 형태를 포착하기 위해 독립 노동(independent work)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독립 노동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 업무, 과제 또는 판매에 따른 지불, 그리고 근로자와 고객 간의 단기적인 관계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산을 임대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독립 노동의 선택이유를 선호(preference)에 의한 경우와 필요(necessity)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프리랜서형(free agents): 독립 노동을 주소득으로 삼는 유형
- 비정기적 소득형(casual earners): 새로운 역량 개발, 흥미, 추가 수입을 위해 부수적인 소득을 얻는 유형
- 전통적 고용 선호형(reluctants): 전통적 고용을 선호하나 기회의 부족으로 독립 노동을 선택한 유형
- 생계유지형(financially strapped): 경제적 생계를 위해 부수적인 일을 선택한 유형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노동을 선택하는 경우, 선호에 의한 경우가 70%로 다수를 차지하며, 생계유지형은 약 30%에 해당한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15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의 20~30%, 즉 최대 1억 6,200만 명이 독립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의 보편성, 도달할 수 있는 방대한 근로자 및 고객 풀,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매칭을 위해 풍부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Harris and Kruege(2015)는 "온라인 깃 이코노미(online gig economy)"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자(employee)" 및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법적 정의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 관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립 근로자(independent worker)"라는 새로운 법적 범주를 제안한다. 이들은 근로자와 독립 계약자 사이의 회색 지대에 속하는 이들로, 일반적으로 중개자(intermediary)를 통해 고객과 연결됩니다. 독립 근로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유사성: 중개자가 요금 또는 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등, 중개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식에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짐
- 독립 계약자 유사성: 독립 근로자는 언제 일할지, 아예 일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중개자와 일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 특정 고용주에게 근로 시간을 귀속시키기 어려움

독립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 선택의 자유로움과 중개자(intermediary)의 일부 통제가 공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두 분류 사이의 회색 지대에 있으며, 이는 기존 사회 계약(social compact)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직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형 분류가 필수적이다. 황준욱 외(2009)의 연구는 작업 방식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프리랜서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 분류는 프리랜서의 '독립성'이 균일하지 않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표면적으로는 모두 프리랜서지만 숙련도와 작업 방식에 따라 실제 노동 조건과 자율성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 **위계적 독립 아웃소싱형**: 중-저숙련의 개별 작업자들로, 자율성이 낮고 위계에 의한 통

제에 종속되기 쉽다. 저속련 웹 일러스트레이터가 이 유형에 속한다.

- **사업자형:** 고속련의 개별 작업자들로, 자율성이 크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 시나리오 작가나 고속련 웹 일러스트레이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수직적 원하청 기반 프로젝트형:** 중-저속련의 팀 단위 협업자들로, 원청의 지시와 통제에 종속되기 쉽다. IT 분야의 SI 개발자들이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형:** 고속련의 팀 단위 협업자들로, 높은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통해 중-저속련 프리랜서는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 통제를 받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에서는 노동자처럼 취급받지만, 대우는 자영업자처럼 받는다"는 프리랜서 노동의 모순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 2. 프리랜서 규모 추산의 방법론적 접근

프리랜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한 개념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조사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는 추산 규모에 큰 편차를 야기한다. 어떤 정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프리랜서 규모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 애초에 전문직으로서의 프리랜서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가짜 프리랜서 간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로 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통계 추정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1) 국내

기존의 고용통계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등 전통적인 종사상 지위 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특성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들 범주만으로는 계약 기간, 계약 상대방의 다양성, 종속성 등 프리랜서의 핵심적인 노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통계청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 ① 경제활동인구조사(경찰조사) 활용

광의의 정의: 경찰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프리랜서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 정의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프리랜서 규모는 48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3%를 차지했고,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49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1%로 추산된다.

협의의 정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관리직'과 '전문직'만을 프리랜서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65.6만 명(전체 취업자의 2.6%)이었으며, 2023년 8월 기준 60.8만 명(2.1%)으로 추산됨

#### ② 지역고용조사 자료 활용

경찰조사보다 상세한 세 자리 직업분류 코드를 제공하는 지역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직종별 규모를 좀 더 세밀하게 추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통계 추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의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광의'와 '협의'의 정의 간에는 수백만 명의 차이가 존재한다. 애초에 프리랜서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존 통계로는 외형적으로는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와 같이 통제를 받는 소위 가짜 프리랜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프리랜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입안자가 어떤 정의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리랜서 통계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목적에 따라 추산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표 2-3〉 국내 통계에서 프리랜서 추정 범주

구분	정의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협의('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관리직' 및 '전문직')
지역고용조사	협의('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범위('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한국노동패널, 근로환경조사

이외에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근로환경조사 등에서 '프리랜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반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추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의 한계는 응답자 스스로에게 주관적으로 자신이 프리랜서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객관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근로환경조사(2023년)의 주관적 프리랜서 응답을 기준으로 대전 지역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응답자는 102,522명으로 12.4%에 달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3년 주기로 전국 50,19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따라서 표본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는 겸업형태의 소위 N잡러들이 참여도 많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프리랜서 여부를 묻는 질문은 부업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프리랜서들의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2-4〉 근로환경조사에서 대전지역의 프리랜서(주관적) 규모(가중치 적용)

	빈도	비율
임금근로자	536,036	64.8
자영업자	247,127	29.9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8,057	21.5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9,912	8.5
-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응답자	102,522	12.4
무급가족종사자	38,090	4.5
일시 휴직자	6,410	.8
전체	826,682	100.0

## 2) 해외

최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비롯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업무 방식의 변화는 현대의 일, 경제, 사회 분석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Behrendt et al, 2019; Kurer & Palier, 2019; Meyer,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공공 통계도 이러한 변화를 표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력 조사에서 사용하는 통합된 정의와 측정은 지금까지 노동 통계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와 복지 제도가 의존해 온 고용 대 자영업 이분법에 기반한 전통적인 근로 형태 분류의 약화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다(Murgia 외, 2020).

이러한 변화와 고용과 자영업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 '종속적' 자영업자(Eurofound, 2017; Eurostat, 2018; Williams & Horodnic, 2018, 2016) 또는 '허위' 및 '가짜' 자영업자(Thörnquist, 2015), '부양 계약자'(ILO, 2018a, 2018b, 2018c) 등의 기준들이 국가 및 유럽 공식 통계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① ICSE-18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동통계의 생산 과정에서 고용상 지위 분류 기준을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ICSE(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있다. 현행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분류체계는 ILO가 1993년 총회에서 결정한 ICSE-93에 기반한 6개의 지위구분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ILO는 2018년 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ICLS)에서 1993년에 제정된 ICSE-93을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한 ICSE-18(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을 통해 위장자영업 및 플랫폼 노동자 식별을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범주를 신설하여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착하고자 한다(ILO, 2018).

1993년에 채택된 ICSE-93은 일자리를 크게 유급 고용 일자리(고용인)와 자영업 일자리(고용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기여 가족 근로자 및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원)로 구분하고 있는데, ICSE-93에 따르면 자영업 지위는 업무 조직 및 인력 고용에 대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 재정적 독립성, 관련 책임 및 제약과 같은 특정 권한이 특징이며, ICSE-93 기준의 틀 안에서 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분류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ICSE-18 분류에서 모호한 근로 상태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여 진정한 자영업의 식별에서 자영업 내 다양한 형태의 종속성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의존 계약자' 등 기존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노동형태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려는 시도다. ICSE-18은 노동자가 수입의 대부분을 단일 고객 또는 플랫폼에 의존하며, 업무지시·성과관리·보수결정 등에서 상당한 종속성을 가진 경우, 자영업자임에도 실질적으로는 임금노동자에 가까운 상태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ICSE-18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를 보다 세밀하고 의미 있게 반영하기 위해, ICSE-93의 6개 고용지위 분류보다 확장된 10개의 고용지위(Status of Employment)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 10개 범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얼마나 권한을 갖는지(권한의 유형) 또는 근로자가 감수하는 경제적 위험의 수준(경제적 위험의 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 분류 방식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SE-18	ICSE-93
<i>Independent Workers</i>	<i>Self-employment jobs</i>
Employ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mployers in corporations</li> <li>• Employers in household market enterprises</li> </ul>	Employers
Independent workers without employ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wner-operators of corporations without employees</li> <li>• Own-account workers in household market enterprises without employees</li> </ul>	Own-account workers
	Contributing family workers
	Members of producer cooperatives
<i>Dependent Workers</i>	<i>Paid employment jobs</i>
Dependent Contractors	
Employ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manent employees</li> <li>• Fixed-term employees</li> <li>• Short-term and casual employees</li> <li>• Paid apprentices, trainees and interns</li> </ul>	Employees
Contributing family workers	
	Workers not classifiable by status

또한 ICSE-18는 두 가지 분류체계를 제시하는데, 권한(authority)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인 ICSE-18-A와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을 기준으로 하는 ICSE-18-R으로 구분된다.

ICSE-18-A는 취업자의 경제적 자율성과 타 경제단위에 대한 통제력을 기준으로 독립 취업자와 종속 취업자로 대분류. 독립 취업자는 다시 법인기업 고용주, 법인기업 소유 경영자, 독립 자영자(고용주), 독립 자영자(자영자)로 세분화되고, 종속 취업자는 피고용인, 종속적 계약자, 무급 가족종사자, 종속적 자영자로 구분되며, 특히 종속적 계약자와 종속적 자영업자 범주의 신설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착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ICSE-18-R은 취업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의 성격에 따라 이윤추구형 취업자와 임금획득형 취업자로 대분류. 이윤추구형 취업자는 ICSE-18-A의 독립 취업자 전체와 종속 취업자 중 피고용인을 제외한 범주를 포함하며, 임금획득형 취업자는 피고용인만을 포함하여 이러한 구분은 소득의 안정성과 사업 위험 부담 여부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ICSE-18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통계청 역시 2021년 ICSE-18적용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기본 안을 결정하였고, 현재 적용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

## ② Eurofound : EWCS

Eurofound는 1990년부터 5년마다 EWCS(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근로 조건과 고용의 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2010년과 2015년 조사에서 종속적 자영업자를 다룬 바 있다.

위장자영업 식별을 위해 '경제적 종속성'과 '운영상의 자율성'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분류하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ICSE-93에서 정한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지표는 '두 명 이상의 고객/소비자를 보유(또는 지배적인 고객이 없음)', '고용 또는 해고 능력 보유', '자신의 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권 보유'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EWC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는 종속형 자영업자를 위의 지표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준수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 ③ Eurostat : EU-LFS 2017

Eurostat은 EU-LFS 2017의 임시 모듈에서 종속적 자영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때 종속성의 기준은 '경제적 의존성'과 '조직적 의존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경제적 의존성은 Supiot의 정의(1999)에 따라 주요 고객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조직적 의존성'으로 분류하는 운영 의존성은 근무 시간에 대한 통제 수준을 고려하여 측정. 이 관점에서는 근무 시간이 주요 고객에 의해 정의될 때 운영 의존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03

## 국내외 프리랜서 정책 사례



# 제3장

## 국내외 프리랜서 정책 사례

### 1. 해외 법·제도 및 정책 사례

#### 1) 미국-캘리포니아주 Freelance Worker Protection Act (FWPA)

캘리포니아의 프리랜서 보호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우 구체적인 보호 장치로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법은 250달러 이상의 프리랜서 서비스에 대해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며, 독립 계약자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된다.

FWPA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정의를 (1) 한 명 이하의 개인 또는 조직, (2) 독립 계약자로 고용되거나 유지되는 노동자, (3)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는 노동자, (4) 직 전 120일 동안 총액이 250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 250달러 이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모든 독립 계약자는 FWPA에 따라 프리랜서 근로자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명시되는데, 서비스 범위, 마감일, 보상금 및 지급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서면 계약서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제공하고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불 기한에 대한 규정도 매우 명확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지불해야 하며,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고용주는 프리랜서에게 계약서에 합의된 금액보다 낮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위반 시 벌칙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프리랜서가 작업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요청했는데 고용주가 거부한 경우, 프리랜서는 추가로 1,0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요구되는 기한까지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계약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프리랜서 근로자는 지급 시점에 미지급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자가 이러한 조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 조치를 취한 프리랜서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노동자나 검사가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2) 독일 - Künstlersozialkasse (KSK)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 시스템인 KSK는 프리랜서 예술가, 저널리스트, 창작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KSK 가입자는 사회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KSK가 지불하며, KSK는 연방 보조금과 예술 및 저널리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용자 부담금(30%)이 고용주 부담금에 해당하며, 연방 보조금이 나머지 20%를 충당한다. 이는 프리랜서가 전체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다.

KSK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장애보험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독일 은행 계좌에서 월별로 보험료를 인출하게 되며, 신청 과정은 일반적인 구직 과정과 유사하여, 포트폴리오, 재무제표,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 자격 요건은 예술가나 저널리스트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며,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직업적 활동이어야 한다.

## 3) 프랑스 - Portage Salarial (임금 이동 제도)

프랑스의 Portage Salarial은 프리랜서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리랜서는 포르타주 회사(중개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으며, 그 다음 프리랜서는 자

신의 고객을 찾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고객은 포르타주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포르타주 회사는 관리 수수료(보통 5-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프리랜서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는 실업보험, 건강보험, 연금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포르타주 회사가 세금 처리, 송장 발행 등의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므로 프리랜서는 자신의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

#### 4) 프리랜서 가이드 라인 : 일본 사례

일본에서는 2021년 3월 26일에 내각관방,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후생노동성 합동 명의로 “프리랜서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었다. 일본의 사례는 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된 것이 특징적인데, 일본 정부는 “고용 유사 노동자”(프리랜서, 도급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4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첫째 가이드라인 제정 (거래 공정성 확보) 둘째, 근로자성 확대 해석 (기존 노동법 적용), 셋째,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자 정의 확장), 마지막으로 노동법 보호 확대 (사회보장 포함)였다. 그러나 2020년 “성장전략 실행계획”에서는 공정거래법 접근을 중심으로 정책을 축소하였고, 프리랜서 보호를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체계로 접근하며, 가이드라인과 집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프리랜서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둘째 중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셋째로 현행법상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이다.

우선, 프리랜서와의 거래 시 사업자는 반드시 공정한 거래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프리랜서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방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다.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동법적 보호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프리랜서와의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자는 프리랜서와의 거래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자를 준수하지 않고 보수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방지법」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작업 완료 후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사전 합의 없이 보수를 줄이는 경우 프리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예를 들어 무단 2차 가공 또는 재판매 등은 금지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작업물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자의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프리랜서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패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과도한 기밀 유지 조항은 무효일 수 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음으로, 일본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은 중개사업자에게 엄격한 공정거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개사업자는 프리랜서와의 계약 시 작업 범위, 보수 금액, 지급 시기, 작업 기간 등 핵심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거래조건 변경 시에는 일방적 변경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프리랜서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보수 감액, 작업 범위 확대 등 불리한 변경은 엄중히 규제된다. 중개사업자는 변경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지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일방적 변경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현저히 불리한 변경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된다. 중개사업자는 변경 과정을 철저히 문서화해야 한다. 변경 협의 내용, 동의 여부, 변경 사유 등을 상세히 기록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변경이 프리랜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자성(労働者性)'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다.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권한, 근무시간 관리, 업무 수행 방식의 제약 등 종속적 요소가 강할수록 노동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작업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간주된다. 이 때 노동기준법상 노동자

성 판단기준과 노동조합법상 판단기준을 별도로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5) 단체교섭의 주체 범위 확대

의존계약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의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의 확대는 주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이에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의존계약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아가, 최근 한국에서 건설노동자들과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 한 사례와 같이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의존계약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반독점 규정의 적용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의존계약자들의 노동권을 침해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독점법은 모든 자영업자를 사업자로 간주하여 자영업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독점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 때 회색지대에 있는 의존계약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EU는 자영업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필요성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EU 경쟁법(특히 TFEU 제101조)은 원칙적으로 사업체 간 경쟁 제한 협정(가격 담합, 시장 분할 등)을 금지하고 있어, 단체교섭이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딜레마가 존재했다. EU 경쟁법은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와 단체교섭 권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U 경쟁법상 '사업체'란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므로 사업체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근로조건을 협의할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EU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단체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장 지배력이 없고 교섭력 불균형이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허용된다. 특히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들이 최저 단가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고숙련 전문직의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 협정, 플랫폼 기업의 임금 억제를 목표로 한 협상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EU의 입장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진정한 의미

의 독립 사업자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 6) 오분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강화 사례

많은 나라들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오분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용자에게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은 단순한 경고에서부터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고액 벌금까지 다양하며 그 심각성은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 분류 오류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실질적으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처럼 노동자 지위를 왜곡할 경우, 관련하여 벌금과 처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분류 오류 근로자당 최대 USD 1,000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스페인은 최대 €187,515(약 2.7억 원)의 과태료와 체납된 사회보험료 추징 + 20~50% 가산금 그리고 형사 처벌이 부여될 수 있다.

프랑스는 2022년 ARPE(플랫폼 노동 관계청)를 설립해 플랫폼의 노동 분류를 감독하며, ARPE는 플랫폼의 분류 결정을 검토하고, "근로자 통제"가 확인되면 재분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로 1차 위반 시 경고가 이루어지며 2차 위반시에는 최대 €50,000(약 7.2억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적 처벌 뿐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고의적 위반 시 2년 징역 + 최대 €300,000(약 43억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성의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 역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부여된다는 점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국내 법·제도 및 정책 사례

### 1) 고용보험 및 사회보장의 확대

정부는 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영세 사업장은

노동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에서 빠지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에 30년간 유지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이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들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7월부터는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 2)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종사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 내용은 소득이 감소(종합소득세 신고 기준)한 프리랜서들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급감한 경우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 3)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부는 2025년부터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출산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에게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4) 직업능력개발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프리랜서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디자인, 영상편집, 프로그래밍, 마케팅 등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실무형 교육과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5)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서울시는 프리랜서가 대금 체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5년 4월 11일부터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도입 배경은 "프리랜서의 약 17%가 작업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연 수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였다.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진되며,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가 주관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기업과 계약한 프리랜서와 의뢰인 누구나이며, 의뢰인이 선결제한 대금을 에스크로(안심결제) 계좌에 예치한 뒤 작업이 끝나면 자동 지급되는 구조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카드 수수료 2.3%(부가세 별도)가 발생한다.

#### 6) 유급 병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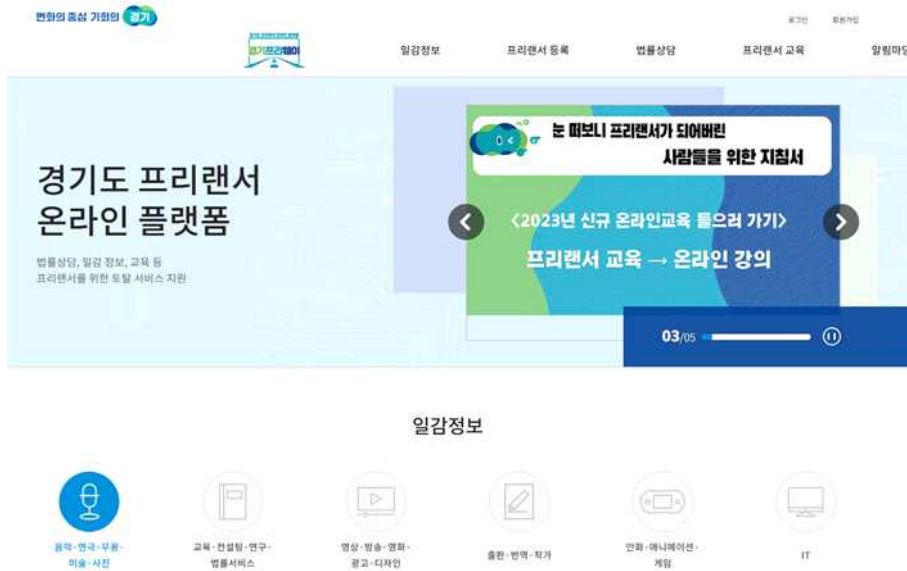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취약계층, 특수고용직 등을 대상으로 한 유급 병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따라서 지원 기간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여 병가 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대전의 경우도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7)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경기프리웨이)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2022년 9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작된 프리랜서 종합 지원 서비스이다.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을 담은 경기프리웨이는 경기도 내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일감 정보 제공부터 법률 상담,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및 네트워크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림 3-1]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메인페이지



## 8) 프리랜서 권익보호지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년에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 권익보호지침」을 개발·배포하였다.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공정한 계약, 인격권, 안전보건, 사회보험, 저작권, 세무 관련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 노동 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계약 유형, 불공정 거래 사례, 괴롭힘, 일·가정 양립 실태 등을 조사해 작성되었으며, 주요 공공기관, 민간기관, 플랫폼 업체 등에 리플릿과 책자 형태로 배포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04

## 설문조사 분석





# 제4장

## 설문조사 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대전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독립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로, 총 52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중 515명은 온라인(모아폼)을 통해서 참여하였고, 13명은 오프라인을 통해 종이 설문지를 통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대리운전 부문 종사자였다.

표본 설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응답 가능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링크를 배포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 22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 2.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63.6%로, 남성(35.8%)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모집단에 대한 엄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직종/분야에 따라서 특정 성비의 비중이 높은 분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비중이 높을 경우, 성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조사에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다.

〈표 4-1〉 성별

	빈도	퍼센트
남성	189	35.8
여성	336	63.6
기타	3	.6
전체	528	100.0

실제로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IT개발이나 배달/운송/방문서비스 부문에서 남성의 비중이 크게 높은 반면, 그 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 종사 분야에 따른 성별 분포

	남성	여성
IT/소프트웨어개발	67.9	32.1
디자인	14.3	83.7
문화/예술	37.5	62.5
엔터테인먼트/미디어	37.5	62.5
체육/건강/미용	23.4	74.5
교육/연구/상담/컨설팅	23.9	74.6
배달/운송/방문서비스	85.0	15.0
금융/재무/회계	45.2	54.8
가사/요양/돌봄서비스	13.3	86.7
여행/관광/통번역	23.5	76.5
기타	32.3	67.7
전체	35.8	63.6

응답자의 연령대에서는 3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활동분야의 빈도에서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분야의 종사자 비중이 가장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들의 연령대가 주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과 더불어,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가족 등 아직 책임져야 할 생계적 부담이나 불안정함을 감수할 수 있으면서, 본인의 일에 대한 열정 등을 지속하는 연령대로서, 이러한 특성은 프리랜서 비중에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이유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3〉 연령대

	빈도	퍼센트
20대 이하	70	13.3
30대	268	50.8
40대	74	14.0
50대	85	16.1
60대 이상	31	5.9
전체	528	100.0

종사 분야별로는 가사/요양/돌봄과 같이 비교적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30대의 비중이 높았다.

〈표 4-4〉 종사 분야에 따른 연령대 분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IT/소프트웨어개발	28.6	60.7	3.6	7.1	-
디자인	8.2	77.6	12.2	2.0	-
문화/예술	14.3	51.8	16.1	16.1	1.8
엔터테인먼트/미디어	26.6	65.6	5.5	2.3	-
체육/건강/미용	4.3	83.0	8.5	4.3	-
교육/연구/상담/컨설팅	8.5	25.4	29.6	31.0	5.6
배달/운송/방문서비스	10.0	35.0	7.5	20.0	27.5
금융/재무/회계	3.2	32.3	32.3	19.4	12.9
가사/요양/돌봄서비스	-	16.7	16.7	53.3	13.3
여행/관광/통번역	5.9	52.9	17.6	17.6	5.9
기타	6.5	16.1	16.1	41.9	19.4
전체	13.3	50.8	14.0	16.1	5.9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1.4%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체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 집단보다는 특고형태에 가까운 노동자 집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 학력

	빈도	퍼센트
고등학교 졸업 이하	60	11.4
대학교 재학/중퇴	69	13.1
대학교 졸업	351	66.6
대학원 이상	47	8.9
전체	527	100.0

응답자의 활동분야의 경우,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 종사자의 빈도가 24.2%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교육 분야, 13.4%, 문화/예술 10.6%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들 분야들은 기존부터 소위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구조가 상당히 활성화된 영역들이기에 이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는 지점이라 보여진다.

〈표 4-6〉 종사 분야

	빈도	퍼센트
IT/소프트웨어개발	28	5.3
디자인	49	9.3
문화/예술	56	10.6
엔터테인먼트/미디어	128	24.2
체육/건강/미용	47	8.9
교육/연구/상담/컨설팅	71	13.4
배달/운송/방문서비스	40	7.6
금융/재무/회계	31	5.9
가사/요양/돌봄서비스	30	5.7
여행/관광/통번역	17	3.2
기타	31	5.9
전체	528	100.0

거주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는 유성구가 33.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구 24.9%, 중구 16.1%, 대덕구 12.5%, 동구 11.9% 순서였다.

〈표 4-7〉 거주지역

	빈도	퍼센트
유성구	174	33.0
서구	131	24.8
중구	85	16.1
동구	63	11.9
대덕구	66	12.5
대전 이외 지역	1	.2
기타	8	1.5
전체	528	100.0

주요 활동(근무)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는 유성구가 2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전 전 지역이라는 응답이 22.8%, 서구 15.3%, 중구 11.9% 순이었고, 대전 이외 지역도 10.7%를 차지했다. 대체로 본인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 전 지역에 걸쳐서 활동하는 비율도 높았다. 또한 플랫폼 등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기술적 지원으로 대전 이외 지역까지 활동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8〉 활동지역

	빈도	퍼센트
유성구	160	23.5
서구	104	15.3
중구	81	11.9
동구	53	7.8
대덕구	44	6.5
대전 전 지역	155	22.8
대전 이외 지역	73	10.7
기타	10	1.5
전체	680	100.0

본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75.6%가 현재의 일을 본업으로 하며, 다른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5.2%는 본업이지만 부업으로 다른 일을 병행하며, 9.3%는 응답한 일이 부업이고, 다른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본업의 수입만으로는 충분한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9〉 본업 여부

	빈도	퍼센트
본업이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399	75.6
본업이고, 부업으로 다른 일을 병행한다	80	15.2
부업이고, 다른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다	49	9.3
전체	528	100.0

현재의 일을 하기 전에 종사했던 이전 경제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27.7%가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현재의 일이 첫 경제활동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26.5%는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닌 경우도 19.3%였고, 이전에도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했다는 응답도 17.2%, 개인사업 또는 자영업이 8.3%로 조사되었다. 다른 의미로는 대부분이 처음부터 불안정 노동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프리랜서(독립노동)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표 4-10〉 이전 경제활동 경험

	빈도	퍼센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146	27.7
정규직 임금노동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140	26.5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102	19.3
특수고용종사자/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다	91	17.2
개인사업 또는 자영업을 했었다	44	8.3
기타	5	.9
전체	528	100.0

### 3. 경력 및 계약구조

현재의 일의 종사기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1년 이상-3년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년 이상-5년 미만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70%이상이 종사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응답자 중 다수가 30대 이하로 경제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는 점과 프리랜서 지위의 불안정의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1〉 종사기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47	8.9
1년 이상-3년 미만	157	29.7
3년 이상-5년 미만	153	29.0
5년 이상-10년 미만	92	17.4
10년 이상	79	15.0
전체	528	100.0

〈표 4-12〉 종사 분야에 따른 연령대 분포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IT/소프트웨어개발	25.0	39.3	28.6	-	7.1
디자인	4.1	22.4	65.3	8.2	-
문화/예술	5.4	17.9	32.1	14.3	30.4
엔터테인먼트/미디어	4.7	37.5	32.0	21.9	3.9
체육/건강/미용	4.3	38.3	44.7	12.8	-
교육/연구/상담/컨설팅	8.5	33.8	16.9	21.1	19.7
배달/운송/방문서비스	7.5	35.0	15.0	17.5%	25.0
금융/재무/회계	6.5	3.2	12.9	32.3	45.2
가사/요양/돌봄서비스	20.0	30.0	20.0	20.0	10.0
여행/관광/통번역	-	17.6	23.5	29.4	29.4
기타	32.3	25.8	3.2	9.7	29.0
전체	8.9	29.7	29.0	17.4	15.0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유연한 근무 시간과 장소’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24.6%로 뒤를 이었다. 프리랜서 업무가 지닌 자율성과 유동성이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연한 근무조건에 대한 선호는 남녀(남성 42.9%, 여성 58.9%) 모두에서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근무조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심층면접 사례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근무시간의 자율성 자체에 대한 내적 선호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육아 등으로 인한 외부적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더 높은 수입의 가능성’이라는 응답도 14.6%로 고정된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과 달리 본인의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커질 수 있는 프리랜서 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인의 전공과의 연계는 예술/문화 등의 산업은 산업 특성 자체가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요인이 있어서, 본인의 전공과 연계되어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프리랜서는 해당 산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선택인 경우와 자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형태가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자와 같이 구조적 강제가 된 노동자성이 강한 프리랜서의 경우, 추정 방식의 강화를 통해 노동법 체계로 편입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 후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4-13〉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

	빈도	퍼센트
본인의 전공과의 연계	143	13.1
유연한 근무 시간과 장소	280	25.6
더 높은 수입의 가능성	159	14.6
자율성과 독립성	258	23.6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 개발	80	7.3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68	6.2
기존 직장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서	43	3.9
개인적인 사정(육아, 돌봄, 건강 등)	55	5.0
기타	6	.5
전체	1092	100.0

계약 방식에 대한 응답에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응답이 43.8%에 불과했고, 구두계약이 21.1%, 비공식적 합의 14.4%, 플랫폼 약관 동의 13.8% 순이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는 응답도 6.5%를 차지했다. 플랫폼 약관이 일정부분 공식적인 계약서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감안한다면, 공식적인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6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계약 방식

	빈도	퍼센트
서면 계약서 작성	301	43.8
구두 계약	145	21.1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한 비공식 합의	99	14.4
플랫폼 약관 동의	95	13.8
별도의 계약 없이 작업	45	6.5
기타	3	.0
전체	1092	100.0

계약시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업무 범위와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및 금액’ ‘작업 기한 및 마감’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되는 반면, ‘수정/보완 요청 범위’, ‘계약 해지 조건’,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표 4-15〉 계약시 계약내용의 명확성

	해당없음	매우 불명확	다소 불명확	대체로 명확	매우 명확
업무 범위와 내용	7.0	6.7	22.1	50.3	13.9
보수 지급 방식 및 금액	3.8	7.0	14.8	42.8	31.6
작업 기간 및 마감	9.0	9.2	18.3	39.5	24.0
수정/보완 요청의 범위	14.5	14.3	26.4	31.5	13.2
계약 해지 조건	13.7	17.0	21.2	31.5	16.6
지적 재산권 귀속	28.4	10.9	19.2	29.1	12.5

## 4. 소득과 노동시간

월 평균소득은 250.82만원으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800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월 평균 업무상 지출은 48.50만원으로 최소값 0에서 최대값 350만원까지 분포하였다. 희망하는 적정 월소득에 대해서는 평균 364.08만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실제 소득과는 100만 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4-16〉 소득과 지출

	N	최소값(만원)	최대값(만원)	평균(만원)	표준편차
월평균 소득	523	0	800	250.82	136.703
월평균 업무상 지출	494	0	350	48.50	50.227
희망하는 적정 월소득	522	100	1000	364.08	150.616

소득을 성별에 따라서 비교해보면, 남성이 289.11원으로 여성 229.77만원보다 60만원 가량 높았으며, 기타응답자는 남성 프리랜서 평균보다 87만원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성별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7〉 성별에 따른 소득과 지출

	월평균	월평균지출	희망월소득
남성	289.11	63.24	408.92
여성	229.77	40.64	339.91
기타	201.67	21.67	266.67
전체	250.82	48.50	364.08

직업에 따라서는 금융/재무/회계(주로 보험설계)가 389.03만원으로 가장 높은 월평균소득을 보이고 있고, 이어서 IT/소프트웨어개발이 321.18만원, 체육/건강/미용 부문이 303.83만원, 디자인 303.4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사/요양/돌봄이 162.57만원으로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고, 문화/예술이 191.39만원, 교육/연구/상담/컨설팅이 193.9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금융/재무/회계 부문은 소득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지출도 111.13만원으로 가장 컸는데, 면접조사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고객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관리비용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배달/운송/방문서비스의 지출액이 73.11만원으로 뒤를 이었는데, 여기에는 이동수단에 대한 지출, 보험료, 수수료 등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문화/예술, 체육/건강/미용 등도 활동을 위한 재료나 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 등이 존재하기에 상대적으로 타 분야보다 지출금액이 높았다.

〈표 4-18〉 종사분야에 따른 소득과 지출

	월평균	월평균지출	희망월소득
IT/소프트웨어개발	321.18	40.38	385.71
디자인	303.47	30.50	314.29
문화/예술	191.39	63.77	342.50
엔터테인먼트/미디어	243.43	39.10	357.09
체육/건강/미용	303.83	60.70	480.00
교육/연구/상담/컨설팅	193.94	34.36	325.07
배달/운송/방문서비스	288.75	73.11	404.59
금융/재무/회계	389.03	111.13	466.13
가사/요양/돌봄서비스	162.57	20.48	296.00
여행/관광/통번역	218.82	34.14	386.25
기타	200.34	39.32	306.67
전체	250.82	48.50	364.08

소득의 불안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41.1%가 월소득의 변동폭이 10이상-30%미만이라고 응답했고, 이어서 30%이상-50%미만이 37.7%, 50%이상이 13.1%였다. 변동폭이 10%미만으로 안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8.1%에 불과하였다. 이는 단기적 일감이나 프로젝트에 기반한 수입구조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건별 노동과 같은 단기 업무는 수행한 일감의 양이나 일한 날짜 등에 즉시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프로젝트형은 보상이 프로젝트 마감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기에 월별 변동폭이 클 수 있다.

〈표 4-19〉 월 소득의 변동폭

	빈도	퍼센트
변동폭 10%미만	43	8.1
변동폭 10이상-30%미만	217	41.1
변동폭 30이상-50%미만	199	37.7
변동폭 50%이상	69	13.1
전체	528	100.0

일에 대한 보상 지급 방식으로는 수행한 일감의 개수(건별 노동)가 43.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프로젝트/미션 단위가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시급이나 월급처럼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기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각각 17.9%, 13.7%에 불과하였다. 즉, 대체로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수행한 개별 미션 단위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른 의미로는 이를 수행하지 못 하거나, 수행 빈도가 감소할 경우,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0〉 일에 대한 보상 방식

	빈도	퍼센트
일한 시간(시급)	132	17.9
월급	101	13.7
수행한 일감의 개수(건별 노동)	318	43.1
프로젝트/미션 단위로 산출(포괄계약)	183	24.8
기타	4	.5
전체	738	100.0

일에 대한 보상의 책정 기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책정 기준이 41.7%로 가장 많았고, 협회나 업체의 공식적인 표준금액 26.7%였다. 그외에는 기준이 없이 협상이나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프리랜서들의 보상에 대한 공인된 표준 금액의 비중이 크지 않고, 이로 인해 경쟁으로 인한 단가 하락, 유동적인 보상으로 인한 임금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표 4-21〉 일에 대한 보상 방식

	빈도	퍼센트
협회나 업체 등에서 책정한 공식적인 표준 금액이 존재	173	26.7
비공식적이지만 대략적으로 보편화된 금액이 존재	270	41.7
전혀 기준이 없고,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	133	20.5
플랫폼 알고리즘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동	67	10.3
기타	5	.8
전체	648	100.0

사회보험 가입여부에서는 지역 건강보험의 비중이 30.2%로 가장 높았고, 지역 국민연금이 21.8%로 뒤를 이었음. 고용구조의 특성상 직장보험 케이스의 빈도가 적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도, 12.1%, 10.3%로 제한된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2〉 사회보험 가입여부

	빈도	퍼센트
국민연금(직장)	90	8.6
국민연금(지역)	227	21.8
건강보험(직장)	109	10.5
건강보험(지역)	314	30.2
고용보험	126	12.1
산재보험	107	10.3
가입한 사회보험 없음	68	6.5
전체	738	100.0

응답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 수는 4.71일이었고,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분포하고 있다.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7.74시간으로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4-23〉 근무시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주일 평균 근무일 수	518	1	7	4.71	1.469
하루 평균 근무시간	519	1	15	7.74	2.531

종사분야별로는 배달/운송/방문서비스가 5.50일로 근무일 수가 가장 많았고, 근무일 수가 가장 적은 것은 3.41일인 디자인 부문이었다. 그러나 하루평균 근무시간으로는 9.51시간으로 디자인 부문의 평균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다.

프리랜서 노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별 혹은 프로젝트 미션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9to6와 같은 일반 임금노동자들과는 다른 노동시간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근무일 수나 근무시간 역시 고정적이지 않고 일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24〉 종사분야별 근무시간

	일주일 평균 근무일 수	하루 평균 근무 시간
IT/소프트웨어개발	4.55	8.11
디자인	3.41	9.51
문화/예술	4.38	6.97
엔터테인먼트/미디어	5.15	8.65
체육/건강/미용	5.17	8.02
교육/연구/상담/컨설팅	4.13	5.43
배달/운송/방문서비스	5.50	8.70
금융/재무/회계	5.29	8.13
가사/요양/돌봄서비스	4.97	6.03
여행/관광/통번역	4.47	6.88
기타	4.54	7.07
전체	4.70	7.72

## 5. 노동과정과 건강

일하는 장소의 경우, 집이나 집안에 마련된 작업실이 34.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계약된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간이 22.1%로 뒤를 이었다. 고객의 공간이라는 응답은 방문노동 형태의 서비스 종사자들이 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카페 등의 공공장소라는 응답도 11.6%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주로 배달, 대리운전 등 도로와 같은 외부공간의 비중이 높았다.

업무공간의 안정성은 공간과 상황적 변수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심리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반면 방문노동이나 이동노동과 같이 외부공간이나 고객의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업무공간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표 4-25〉 근무장소(다중응답)

	빈도	퍼센트
집 또는 집안에 마련된 작업실	268	34.7
계약된 사용자나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공간	171	22.1
카페/공공장소	90	11.6
코워킹 스페이스(공유공간)	32	4.1
고객의 공간(고객의 집, 사무실 등)	101	13.1
별도로 마련된 개인공간	80	10.3
기타	31	4.0
전체	773	100.0

일감을 찾는 방식으로는 ‘개인 네트워크 또는 지인 소개’가 24.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21.7%, 기존 고객의 재의뢰나 소개 13.8% 순이었다. 플랫폼과 같이 무작위적인 매칭이 아닌 이상, 일감을 얻는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감의 안정적인 수주를 위해서는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특히 소수의 특정 고객에 대한 일감에 대한 의존성의 심화는 일감 수주의 안정성을 가져오기도 하는 한편, 노동관계적 종속성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으며, 노동자 오분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표 4-26〉 일감의 확보 방식

	빈도	퍼센트
개인 네트워크 또는 지인 소개	247	24.5
온라인 플랫폼	219	21.7
소셜 미디어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119	11.8
회사나 기관이 직접 의뢰	120	11.9
에이전시나 중개업체를 통해	84	8.3
기존 고객의 재의뢰나 소개	139	13.8
계약된 업체에서 일정한 일감 할당	76	7.5
기타	5	.5
전체	1009	100.0

일하는 과정에서의 지시/통제에 대해서는 35.6%가 대체로 자유롭지만 느슨한 수준의 통제나 지시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어서 일부 자율성이 있지만, 정해진 매뉴얼과 지시가 있다는 응답이 32.2%로 뒤를 이었다. 사용자나 관리자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경우는 1.1%로 소수였다.

〈표 4-27〉 사용자의 통제 및 지시 여부

	빈도	퍼센트
통제나 지시 없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일함	97	18.4
대체로 자유롭지만, 간혹 느슨한 수준의 통제나 지시를 받기도 함	188	35.6
일부 자율성이 있지만, 대체로 정해진 매뉴얼이나 지시에 따라 일함	170	32.2
직접적인 통제나 지시는 없지만 플랫폼 등의 기술을 통해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감시나 통제가 이뤄짐	60	11.4
일체 자율성 없이 사용자/관리자의 통제를 받음	6	1.1
기타	7	1.3
전체	528	100.0

숙련에 대한 보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부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5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27.5%였고, 체계적으로 보상이 보장된다는 응답이 13.4%에 불과하였다.

〈표 4-28〉 숙련에 대한 보상 여부

	빈도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45	27.5
일부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311	58.9
숙련에 따른 보상이 체계적으로 보장된다	71	13.4
기타	1	.2
전체	528	100.0

일하면서 겪은 부당한 사례로는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적인 업무지시가 1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해지가 13.7%, 불합리한 수정/보완 요구 12.0%, 과도한 업무량과 일정이 11.8%, 보수 미지급 10.5%, 고객으로부터의 갑질이 10.3% 순이었다. 부당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도 10.3%였다.

〈표 4-29〉 부당사례

	빈도	퍼센트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적인 업무 요구	173	17.8
보수의 미지급(일부 미지급 포함)	102	10.5
일방적인 계약 변경 또는 해지	133	13.7
불합리한 수정/보완 요구	117	12.0
지식재산권 침해	65	6.7
과도한 업무량/비현실적인 마감일	115	11.8
중개업체, 플랫폼 등으로부터의 갑질/부당한 대우	49	5.0
고객으로부터의 갑질/부당한 대우	107	11.0
부당한 경험이 없음	100	10.3
기타	10	1.0
전체	971	100.0

부당 경험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는 그냥 참고 넘긴다는 경우가 33.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객과 직접 협상한다 23.8%, 동료프리랜서의 도움 15.5%, 중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의 중재 10.2% 순이었다. 대체로 참거나 개별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적기관이나 노동조합 등을 통한 경우의 빈도가 낮은 특성을 보여준다.

〈표 4-30〉 부당사례 대응방식

	빈도	퍼센트
그냥 참고 넘김	283	33.8
고객과 직접 협상	199	23.8
중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의 중재	85	10.2
법적 소송	21	2.5
노동센터 등 공적지원센터의 지원	26	3.1
동료 프리랜서의 조언/도움	130	15.5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도움 요청	31	3.7
노동조합의 도움	16	1.9
계약을 파기(일을 그만둠)	40	4.8
기타	6	.7
전체	837	100.0

일로 인한 건강문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6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면장애 및 만성피로가 61.5%, 위장관 질환이 50.2%, 심리적 불안감 등이 36.3%, 비뇨기계 질환이 24.0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대리운전 등과 같이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거나 충분한 휴식의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수면장애 및 만성피로, 업무로 인해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급하게 먹어야 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위장관 질환, 감정노동이나 과도한 경쟁 등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불안감, 화장실 등 생리적 문제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방광염 등의 비뇨기계 질환 등이

〈표 4-31〉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근골격계 질환	36.0	49.1	14.2
위장관 질환	49.2	35.8	14.0
호흡기계 질환	79.2	16.5	3.2
청각관련 질환	84.9	13.4	1.7
피부 질환	82.3	14.4	3.3
비뇨기계 질환	76.1	21.1	2.9
신체손상	83.1	12.9	4.0
수면장애, 만성피로	38.5	45.1	16.4
심리적 질환	63.7	29.8	6.5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업무 자체의 위험도가 높아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응답의 경우, 높다는 응답(높음+매우높음)이 14.2%로 낮았지만 않았지만, 배달/운송/방문서비스에서 높다는 응답(높음+매우높음)이 69.2%를 차지할 정도로 타 직군 대비 높은 응답을 보였음

상대적으로 업무로 인해 불편한 자세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응답이 각각 40.5%, 35.2%로 다른 위험요인들에 비해서 노출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생리활동 제한도 24.1%로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 수준을 보였음. 외부환경 노출은 16.2%로 낮았지만, 이 역시 배달/운송/방문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76.3%로 타 직군 대비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표 4-32〉 업무과정에서의 위험노출

	없다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사고 위험	45.0	19.9	20.9	10.4	3.8
불편한 자세	21.6	16.1	21.8	29.4	11.1
불규칙한 식사	22.6	18.8	23.4	27.8	7.4
생리활동 제한	34.6	20.3	21.0	19.7	4.4
외부환경 노출	51.0	19.2	13.7	12.0	4.2

휴가나 병가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5.1%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28.8%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휴가나 병가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나 대체자가 필요하거나 이로 인해 휴가 활용이 거의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14.6%, 11.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체육/건강/미용 부문과 배달/운송/방문서비스 부문이 타 부문에 비해서 휴가나 병가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건강/미용 부문은 일종의 레슨이 예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대체자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배달/운송/방문서비스 건별 노동으로서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을 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4-33〉 종사분야별 휴가 및 병가 활용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	협의를 통해 가능	휴가나 병가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나 대체자 필요	휴가나 병가 활용이 거의 어려움
IT/소프트웨어개발	32.1	53.6	7.1	7.1
디자인	12.2	65.3	12.2	8.2
문화/예술	37.5	44.6	8.9	7.1
엔터테인먼트/미디어	27.3	45.3	17.2	10.2
체육/건강/미용	8.5	59.6	31.9	-
교육/연구/상담/컨설팅	28.2	43.7	8.5	19.7
배달/운송/방문서비스	25.6	28.2	17.9	28.2
금융/재무/회계	71.0	19.4	6.5	3.2
가사/요양/돌봄서비스	20.0	50.0	16.7	13.3
여행/관광/통번역	35.3	35.3	23.5	5.9
기타	41.9	35.5	9.7	12.9
전체	28.8	45.2	14.6	11.0

프리랜서들의 일의 특성과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고객에 대한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응답은 전체 평균이 4.32점으로 중간값이 이상의 평균을 보였고, 특히 체육/건강/미용이 5.6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금융/재무/회계, 디자인, 배달/운송/방문서비스, 교육/연구/상담 부문의 점수가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고객의 평가가 노동자의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평균이 4.49 점으로, 체육/건강/미용 부문이 5.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디자인, 금융/재무/회계, IT/소프트웨어개발, 여행/관광/통번역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스스로가 프리랜서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평균은 4.45점이었고, 배달/운송/방문서비스 부문이 5.34점으로 스스로를 프리랜서 보다는 노동자로서 평가한다는 점수가 높았다. 이어서, 체육/건강/미용, 가사/요양/돌봄 서비스가 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반면에 금융/재무/회계, 문화/예술 부문은 평균이 3점대 낮았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주어지더라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이 4.21점이었고, 업종별로는 체육/건강/미용이 4.83점으로 프리랜서로서의 위치를 더 선호하고 있었고, 이어서 여행/관광/통번역, IT/소프트웨어개발의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교육/연구/상담/컨설팅과 배달/운송/방문서비스는 선호가 낮았다.

〈표 4-34〉 종사분야별 일의 특성과 정체성(7점만점)

	고객감정노동	고객평가영향	노동자성	프리랜서선호
IT/소프트웨어개발	3.93	4.54	4.57	4.57
디자인	4.76	5.29	4.90	4.43
문화/예술	3.96	4.00	3.61	4.23
엔터테인먼트/미디어	3.56	4.28	4.02	4.40
체육/건강/미용	5.66	5.81	5.28	4.83
교육/연구/상담/컨설팅	4.55	4.37	4.52	3.44
배달/운송/방문서비스	4.69	4.32	5.34	3.73
금융/재무/회계	4.97	4.81	3.23	4.35
가사/요양/돌봄서비스	4.63	3.77	5.23	4.23
여행/관광/통번역	3.88	4.59	4.88	4.82
기타	4.00	3.77	4.65	3.68
전체	4.32	4.49	4.45	4.21

## 6. 노동조건 만족도와 정책제안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일을 통한 보람과 자아실현에 대한 만족도가 5.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율성 5.09점, 발전가능성 4.50점, 워라벨 4.32점으로 뒤를 이은 반면,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점수가 3.8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보람/자아실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배달/운송/방문서비스는 3.97점으로 평균보다 1점 이상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득/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4.02점으로 금융/재무/회계, 디자인, IT/소프트웨어개발, 체육/건강/미용 등 소위 전문직에 가까운 직군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문화예술 부문의 만족도가 3.38점으로 가장 낮았다.

워라벨에서는 IT/소프트웨어개발 부문이 5.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디자인, 배달/운송/방문서비스 부문의 평가가 낮았다.

자율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은 전체 만족도 중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배달/운송/방문서비스의 평균이 2.87로 특히 낮았다.

일을 통한 발전 가능성과 직업의 장기전망에 대해서는 IT/소프트웨어개발 부문이 가장 높았던 반면, 배달/운송/방문서비스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표 4-35〉 노동조건 만족도 (7점만점)

	보람/ 자아실현	소득/ 보상	워라벨	자율성	사회적 인식	발전 가능성	장기적 전망
IT/소프트웨어개발	5.50	4.57	5.29	5.14	4.39	5.21	4.86
디자인	5.57	4.76	3.51	5.24	3.69	4.43	4.06
문화/예술	5.45	3.38	4.55	5.36	4.07	4.86	4.02
엔터테인먼트/미디어	5.30	3.77	4.41	5.25	3.71	4.20	4.06
체육/건강/미용	5.02	4.36	4.49	4.68	3.96	5.04	4.83
교육/연구/상담/컨설팅	5.32	3.97	4.68	5.39	4.49	4.85	4.30
배달/운송/방문서비스	3.97	3.49	3.33	4.39	2.87	3.18	2.82
금융/재무/회계	5.06	4.94	4.48	5.61	3.90	4.84	4.65
가사/요양/돌봄서비스	5.03	3.93	4.67	4.57	3.50	4.30	4.57
여행/관광/통번역	5.53	4.06	5.24	5.18	4.82	4.94	4.18
기타	4.65	4.03	4.19	4.32	3.52	4.10	3.65
전체	5.17	4.02	4.38	5.09	3.87	4.50	4.15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불안정한 수입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이어서 일감 확보의 어려움, 사회보험/복지혜택 부족, 과도한 경쟁/단가 하락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과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주요한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4-36〉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어려움 점(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불안정한 수입	337	21.3
사회보험/복지혜택 부족	209	13.2
일감 확보의 어려움	259	16.4
과도한 경쟁/단가 하락	184	11.6
법적 보호 장치 미비	126	8.0
불공정 계약 관행	86	5.4
전문성 개발/교육 기회부족	100	6.3
경력/숙련에 대한 보상 부재	131	8.3
일과 일상 경계 모호함	80	5.1
고립감/소속감 부재	67	4.2
기타	4	.3
전체	1583	100.0

프리랜서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선호되는 개선방안으로는 '프리랜서 특화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표준계약서 의무화', '세금 혜택/공제 확대', '최저 단가 가이드라인 도입'이 뒤를 이었다.

〈표 4-37〉 개선방안(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표준계약서 의무화	215	13.6
최저 단가 가이드라인 도입	185	11.7
프리랜서 특화 사회보험 제도	243	15.3
체불/계약 분쟁 해결 지원	103	6.5
세금 혜택/공제 확대	200	12.6
프리랜서 공제회/상호부조 제도	114	7.2
직업훈련/역량 개발 지원	116	7.3
공동 작업공간/시설 지원	94	5.9
프리랜서 노동조합 등 연대체 활성화 지원	124	7.8
프리랜서 대출 등 금융지원	112	7.1
문화/예술/체육 공적 지원 확대	75	4.7
기타	4	.3
전체	1585	100.0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프리랜서로서의 본인의 일에 미칠 영향 물었고 이때, 본인에 일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수록 높은 점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우선 고령화에 대해서는 평균 3.83점으로 중간값이 4점보다 낮았다. 체육/건강/미용 부문과 가사/요양/돌봄서비스 부문이 각각 4.51점, 4.40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고령화시대에 건강이나, 돌봄이란 화두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부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을 이해할 수 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전체 평균 3.10점을 낮은 평가를 받았고, 디자인 부문이 4.20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54점이었고, IT/소프트웨어개발이 3.00점으로 가장 부정적이었고, 이어서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문화/예술 순으로 부정적이었다.

〈표 4-38〉 사회적 변화가 일에 미칠 영향 (7점만점)

	고령화	저출생	인공지능
IT/소프트웨어개발	3.50	2.86	3.00
디자인	4.27	4.20	3.82
문화/예술	3.54	3.05	3.34
엔터테인먼트/미디어	3.40	2.91	3.12
체육/건강/미용	4.51	2.64	3.87
교육/연구/상담/컨설팅	4.13	3.00	3.68
배달/운송/방문서비스	3.32	2.84	3.76
금융/재무/회계	3.84	3.06	3.55
가사/요양/돌봄서비스	4.40	3.03	3.50
여행/관광/통번역	3.12	3.35	4.06
기타	4.45	3.58	4.42
전체	3.83	3.10	3.54

## 7. 대전지역의 노동환경과 이동노동자 실태

대전에서 거주 혹은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대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에 어떠한지를 질문하였다. 질문은 일자리 및 일감, 프리랜서 정책지원, 업무 인프라, 생활 인프라로 구분하였다.

일자리나 일감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평균은 3.97점이었고, 가사/요양/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가가 4.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IT/소프트웨어개발이 4.6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디자인 분야의 평가는 2.88점으로 가장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지원에 대한 점수는 전체평균이 3.41점이었고, 배달/운송/방문서비스가 2.76점으로 가장 부정적이었고, 이어서 디자인 종사자들이 2.82점으로 뒤를 이었다. 긍정적인 평가는 IT/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점수가 높았다.

업무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전체평균 3.73점이었고, 여행/관광/통번역 부문이 4.41점으로 가장 높았다. IT/소프트웨어개발이 4.39점으로 뒤를 이었고, 체육/건강/미용 부문 종사자도 4.19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생활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전체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았다. 종사부문별로는 IT/소프트웨어개발이 4.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체육/건강/미용이 4.53점으로 뒤를 이었다. 배달/운송/방문서비스 종사자의 평점이 3.08점으로 가장 부정적이었다.

〈표 4-39〉 프리랜서로서 대전에 대한 평가 (7점만점)

	일자리	정책지원	업무 인프라	생활 인프라
IT/소프트웨어개발	4.64	4.00	4.39	4.64
디자인	2.88	2.82	3.04	3.49
문화/예술	3.68	3.20	3.48	3.88
엔터테인먼트/미디어	4.33	3.52	3.84	4.04
체육/건강/미용	4.47	3.70	4.19	4.53
교육/연구/상담/컨설팅	3.80	3.30	3.56	3.75
배달/운송/방문서비스	3.44	2.76	3.46	3.08
금융/재무/회계	4.16	3.74	4.00	4.10
가사/요양/돌봄서비스	4.70	3.87	4.13	4.10
여행/관광/통번역	4.41	3.88	4.41	4.53
기타	3.35	3.29	3.26	3.61
전체	3.97	3.41	3.73	3.94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6.3%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중 52.0%가 이용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홍보 및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프리랜서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쉼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0〉 쉼터 이용 경험

	빈도	퍼센트
이전에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이용하겠다	33	6.3
이용한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용하겠다	274	52.0
이용할 생각이 없다	216	41.0
기타	4	.8
전체	527	100.0

쉼터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낮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쉬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2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활동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업무 특성상 쉼터에서 휴식하는 것이 어려움’, ‘특정 업종만 이용하는 곳 같아서’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4-41〉 쉼터 이용의 제한 사항(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활동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188	22.3
근무시간과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101	12.0
낮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쉬는 것이 불편해서	200	23.7
주차, 건물 2층 등 접근성 불편	77	9.1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등 특정 업종만 이용하는 곳 같아서	104	12.3
업무 특성상 쉼터에서 휴식하는 것이 어려움	168	19.9
기타	6	.7
전체	844	100.0

센터에서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세무상담 및 교육'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법률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는 단순히 휴식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

〈표 4-42〉 센터에서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일과 관련된 고충 및 법률적 지원과 정보 제공	211	19.4
세무상담 및 교육	213	19.6
타 직종으로의 전직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124	11.4
산업안전 및 건강/심리 관련 상담 프로그램	130	11.9
노동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205	18.8
노동자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	121	11.1
같은 직종 종사자간 소통과 조직화 지원	84	7.7
기타	1	.1
전체	1089	100.0

## 8. 자유의견

### 1) 주요 키워드

#### ① 사회보장 및 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 '복지'와 관련된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출산·육아 시 수입이 끊기는 문제나 육아휴직 혜택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프리랜서는 임금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은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노동영역에서의 보호의 한계를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복지영역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② 소득 및 일자리

'안정적인 소득', '일거리', '일감' 등의 키워드가 자주 언급된다. '최저임금'이나 '가이드라인' 설정 등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좀더 나아가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자가 아니기에, 일감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자칫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순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③ 법적 보호

'법적 보호장치', '법적 기반', '법률' 등의 키워드를 통해 불공정 계약, 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의견이 많다.

#### ④ 세금 및 금융

'세금', '세무', '비용처리' 등 세금 신고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대출' 관련 어려움과 금융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실제로 충분한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서비스의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 ⑤ 정보 및 인식 개선

'홍보' 부족,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동자로서의 인정', '인권 보호' 등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바라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 ⑥ 맞춤형 지원책

'5인 미만 사업장', '보험설계사', '예술인', '이동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특정 직종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 2) 주요 문제의식

- ①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 형태:**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일감이 끊길 경우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 ② **사회안전망 부재:** 4대 보험, 퇴직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의료, 노후 등 전반적인 삶의 불안정성이 크다.
- ③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 불공정 계약,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 ④ **세무·금융의 어려움:** 복잡한 세금 신고와 경비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며,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다.
- ⑤ **낮은 사회적 인식:** 프리랜서가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독립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표 4-43〉 자유의견

자유의견
최저단가가 사회적으로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개방형화장실이 조금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더 확실히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로서 장기근속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직장4대보험이 필요하고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이동자 쉼터도 노동조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스트레스안받게되면 좋겠다
세금신고에 도움받을 안내, 일거리연결 플랫폼
복지서비스 부족
의료보험제도 도입
사업장에 들어가 업무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 내 노조 결성 및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당연히 보장되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요청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노동법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사회보험 혜택이 있길바랍니다
최소한의 소득보장
세무 업무가 복잡해서 힘들. 세무사무소 연결이나 수수료 등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음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거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있다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노동자에 대한 인식
노조의 활성화가 있으면 좋겠다
좀더 많은 정책 개발을 해 주세요
보험설계사 법적보호장치가 전혀없음 보험사의 불합리한행포와 갑질이 만연하지만 공론화 된적 없음 예를들면 가입할때와 보상할때가 다름. 보상이 많고 손해율 높으면 판매제한하며 제재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음 고객과 보험설계사만 보험사의 갑질에 피해심각함
경력대우
경력우대보상
사회보험
세금 면제
시급 이만원받고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험 못받는 직종 확대적용
독립노동자라고 포괄적으로 묶지 말고 세분화해서 파악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독립노동자가 많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노동환경이나 임금보다는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얻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도 절실하다.
최저임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인권보호해주세요.
임금체불 부당한 퇴사통보에 대한 노동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음 좋겠어요
프리랜서일들이 많아졌으면합니다..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법률제정까지~~~
노동조합결성
정보공유,같은 직업 소규모 모임이든 고충털어놓기
꾸준한 일감과 소득
외국인보다 의료보험 비용이 적었으면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도 급여등 신고하고 세금도 내니 정규직처럼 대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스로 시작한 프리랜서지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해 생계에 대한 불안이 큼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프리랜서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세금관련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오래 개선되지 않네요ㅏㅏ
이런제도가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것 2.사대보험등보장이어려운것 3.수입이불안정하다보니그에관련한정부지원이있어도좋을것같음(긴급생계대출등) 4.클라이언트(업체)로부터부당한경우가생겨도노동청신고가어려움
가격적인 측면만 보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닌 질적인 서비스나 콘텐츠를 체크한 후에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관련 정책
더 많은 지원(경제적) 과 공간(시설)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산시 일반 회사처럼 육아 휴직 등의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한도나 대출 관련하여 일반 직장인에 비해 불리한 점 개선 요
예술인 기본소득
비용처리를 위한 자료 만들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가이드라인이 자세하게 배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보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증 줄였으면
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복지, 금융,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이 설문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적힌것들중 몇가지만 개선이되어도 지

금보다훨씬 프리랜서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감이 너무 없는데 현실적인 생존 가능한 일터를 원한다
공유가 필요
기본권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보험제도가 필요해요
프리랜서또한 일반 노동자 처럼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확실한 최저임금 가이드 라인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맞춤형 제도 마련
프리랜서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장치 마련
불공정 계약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확대
고용보험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불공정계약방지를통해안타까운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다
세무·회계 지원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세무 및 소득신고 간소화가 되었으면한다. 소득이 불규칙하고 경비처리가 어렵다
소득 증빙이 쉬운 간편 장부 시스템 도입
고용형태에 따라 복지가 차별되는것은 문제가 있다 프리랜서도 건강검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프리랜서 전용 주거지원 정책 신설
장기 근속 프리랜서 대상 퇴직금 적립 제도 도입
적극적인 지원 필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심도있는 정책 마련해주세요
직업훈련 및 재교육 지원 확대
공공 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 참여 기회 확대
프리랜서 전용 복지 포인트 제도 도입
출산·육아 프리랜서 대상 유급 지원금 도입
세제혜택 확대
산재보험 등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확대
프리랜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지원
고용노동부 내 프리랜서 전담 창구 신설
프로젝트 단가 공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미지급 임금에 대한 공공기관 대행 청구제 마련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 구조 및 지원 강화
프리랜서 신용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공공기관 납품 시 프리랜서 가산점 제도 도입
프리랜서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 및 접근성 강화
지원좀 많이해주세요...
가사노동자에게 여러 혜택을 적용해주세요
프리랜서 노동자 인권문제도 다뤄주세요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제공 필요고 직업 강화교육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늘려주세요
복지혜택좀 주세요~
프리랜서 노동자도 같은 노동자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1인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먼저 만들어서 실현해해주세요
출 퇴근도 자유로운 사람들은 프리랜서라고 한다. 하지만 주변을 잘 둘러보면 학원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 제 직업인 헤어디자이너들만 봐도 말로는 프리랜서이지만 프리하게 일하지 못하며, 4대보험 등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건 조금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보장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조직생활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키우고자 했으며, 개인적 비전을 차치하고 일단 불합리한 기업 내 근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심신의 불건강을 얻는데도 직장 생활을 안정적이라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독립노동자는 사회에서 전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없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발이 묶여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정주하게 되는데도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들이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그들을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난 골치아프거나 책임감 없는 문젯거리로 삼지 말고 주체적인 노동 문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해요. 사회가 만든 틀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 세상에 내놓을 수조차 없는, 몸값을 낮춰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작 문제 상황을 남 일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의 일이니까요.
지원
복지강화
프리랜서를 위한 고정 수입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들을 위한 복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시 쉬는동안 수입이 0원이되는데 그 어느곳에서도 지원을 받을수 가 없어여
사대보험
프리랜서를 위한 전용 공간이나 공공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업무나 여러 마주침의 경우에 프리랜서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애써주세요.
프리랜서 일자리 알선 역할을 해주는 정책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일 하는 시간 좀 더 많이 주세요
합당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수입? 을 위한 지원
정부지원이 절실 안전망 확대 필요
대출 지원 확대 원함
수입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보장 할수있게 기본소득 보장법 시행하면 좋을것 같아요
프리랜서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법이 있음 좋겠어요
세금 계산 너무 어려워요
복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몇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보험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보교류
프리랜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일할수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여가 부족함
금융권에서 대출시 프리랜서는 소득 인정을 받기 어려움 정책 지원 필요
사회보장제도
독립노동자마다 요구들이 다를 수 있으나 잘 파악과 조사이후 정책에 반영되는 노력이 필요.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
- 국가 차원에서 분야별 프리랜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이루어지길 바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교육지원 요청
과도한 규제도 필요하나 과도한세금이나 처벌 위주의 견제는 줄어들이기 바램
요즘 ai로 바껴서 사람들의 일감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지원 기관 등에서 동일 업종사자들 간의 소통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도움
프리랜서들이 자유롭게 일감을 구하고 임금을 받는데 쉬운 구조와 홍보,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금 관련 정책, 프리랜서 대출, 지원금 정책 확대
연 사업소득이 정말 적은 돈만 잡혀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달에 2-30만원 큰돈아니실 수 있지만 보통의 소상공인에겐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금액일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들끼리 살아남을 수 있는 관계망... 죽고싶은걸 막아줄 수 있는 관계들
대전에 비어있는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저렴하게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수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많아지고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같은 업종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소득공제나 법적인 문제 등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
1. 독립노동자라는 용어부터 부정적 인식이 된다.
2. 청년또는노년관련정책대비안정적일것이라인식하는중년대상정책수준이미비하다.
3. 예술계프리랜서가많은데프리랜서에포함된직종범위가광대하다. 분야또는직종별프리랜서조사또는연구가필요하다.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법률 분쟁에 대한 무료 자문 서비스 확대, 그리고 직업별 단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상담, 교육 분야는 시의 보조를 받는 구조로 변화하는 만큼, 디지털 교육지원과 전환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사회보험과 복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안합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돌봄 노동자 특화 지원 정책과 쉼터 운영 시간 확대, 법률 상담 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 05

## 심층면접 분석





# 제5장

## 심층면접 분석

심층면접은 설문조사 응답자 중 심층면접 희망자 및 지인 등을 통한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나기 위해 되도록 직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 5-1〉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코드	분야	코드	분야
AF-1	웹툰/웹소설 작가	AF-15	PT강사
AM-2	음악가	AF-16	방송작가
AF-3	필라테스 강사	AF-17	헤어디자이너
AM-4	라탄공예	AF-18	보험설계사
AM-5	영상편집	AF-19	통계조사원
AM-6	치어리딩 강사	AF-20	아트디렉터
AF-7	웹디자이너	AM-21	시사유튜버&독립PD
AF-8	연극	AM-22	사진작가
AM-9	인디밴드	AF-23	시인
AM-10	독립영화	AF-24	부동산공인중개사
AF-11	미술강사	AM-25	방문가전서비스
AM-12	사회자	AF-26	요양보호사
AF-13	웹툰/미술방문강사	AM-27	개발자
AF-14	이중언어지원강사		

## 1. 직종별 진입 동기 및 활동 현황

프리랜서가 된 계기와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내재적 동기(적성, 취미, 관심)를 따라 진입한 경우이며, 둘째, 외부 환경의 변화(질병, 출산, 사업 실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우이다. 이는 프리랜서 노동 시장이 낭만적인 '자유성'의 공간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이들이 진입하는 '대안적' 공간임을 시사한다.

### 1) 내재적 동기에 의한 진입: '적성과 기회의 결합'

해당 유형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프리랜서의 길에 들어섰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해당 산업 구조 자체가 프리랜서와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었고, 문화예술과 같은 창작산업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주로 보이고 있다.

웹소설 작가의 경우, 원래 글쓰기를 좋아하던 취미가 우연한 기회에 직업으로 연결된 사례이다. 해당 참여자는 과거에 별다른 생각 없이 네이버 도전 웹소설에 작품을 올렸다가 출판이 되면서라고 언급했다.

물론 참여자는 본래 스릴러 장르를 의도했으나, 플랫폼의 의견에 따라 로맨스 작가로 분류되면서 현재는 로맨스 장르의 작품을 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진로가 결정될 수 있는 시장의 특성을 보여준다.

영상 편집자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대학시절 활동과정에서 우연하게 영상편집 분야에 입문하게 되었고, 이후 사설 학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상편집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우연한 기회로 접한 일이 적성에 맞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방송 작가 또한 문학에 대한 관심과 글쓰기 갈망을 동기로 삼았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고, 전공을 바꾼 후에도 글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졸업 즈음의 모집 공고를 보고 시험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방송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헤어 디자이너는 "어렸을 때부터 인형 머리 자르거나 그냥 그런 게 재미있어서" 미용을

시작했으며, 16세에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며 일찍부터 이 분야에 몸담았다. 이후 대학교에서 미용을 전공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해왔다고 언급했다.

사진작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피팅 모델 제안을 받아 사진 찍히는 경험을 먼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진이라는 콘텐츠에 매력을 느끼고 "나도 누군가의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사진이라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군 복무 중 카메라 정보를 공부하고 직접 구매하여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이중언어지원강사는 한국에 온 뒤 처음에는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많아지면서 통역 업무를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연극(마당극)배우는 대학에서 음악(성악)을 전공했지만, 80년대 후반 학생운동 시기 문화관이 왕성했던 때에 탈춤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당극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이후 사회에 나와 마당극패를 조직하고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연극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미술강사는 원래 화가로서의 삶을 꿈꾸며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공을 살리면서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공신력 있는 자격증(교원 자격증)을 얻고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일을 직업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애초에 해당 산업이 프리랜서라는 고용/계약형태가 지배적인 형태로 유지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자발적 의지라는 선택적 요인이면서도, 불가피하게 프리랜서 이외의 선택지가 없었을 가능성 역시 함께 공존하고 있다.

## 2) 외재적 동기에 의한 진입: '구조적 제약의 대안'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개인의 의지보다는 외부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했다. 기존의 노동 시장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고정된 근무 형태가 이들의 삶에 맞지 않아, 대안적 선택으로 프리랜서가 된 경우이다.

보험 설계사는 30대 초반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겪게 된 '독박 육아'가 프리랜서가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9시 출근 6시 퇴근" 시스템으로는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영업직을 선택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역시 건강 문제로 인해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사례이다. 2019년 유방암 수술 이후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웠고, 목 디스크 때문에 사무직도 힘들어 "뉘 놓고 있기는 그렇고 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루에 3시간만 일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건강 문제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방문 가전 서비스 방문노동자는 기존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교재를 납품하는 개인 사업을 운영했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생활비라도 써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방문 가전 서비스 일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전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통계조사원은 작은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20년 이상 이 일을 해왔는데,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직종을 찾다가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할 거리를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사무실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므로, 아이들 어렸을 때는 낮에 일할 필요 없이 배우자가 퇴근한 뒤 교대하는 방식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필라테스 강사는 원래 항공사 취업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채용이 중단되었고, 그 시기에 취득했던 자격증으로 필라테스 강사 시장이 커지면서 본업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치어리딩 강사는 청소년 교육 상담 전공으로 정규직 취업을 위해 대전에 왔으나 3개월 만에 해고된 후, 청년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치어리딩 강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개발자는 철학을 전공했지만, 개발업계에 있는 선배의 소개로 국비 지원 학원에서 코딩을 배우고 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었는데 "해볼까 해서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정형화된 정규노동시장 혹은 고용형태의 노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 및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리랜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특히 여성들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여전히 출산과 육아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택으로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불안정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개선문제는 노동의 성별격차의 차원에서도 접근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 2. 직종별 계약 및 업무 과정의 구조적 특성

프리랜서 노동은 겉으로는 '자율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통제되고 있으며, 계약 관계는 매우 모호하고 수입 구조는 불안정했다. 이는 프리랜서들이 온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 1) 계약 형태의 모호성과 노동자성과의 괴리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은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구두 계약이나 위수탁 계약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용 및 소득불안정과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방송 작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계약서가 없으니까 구두로 그냥 할래 네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일하는 거고"라며,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번 달까지만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현실을 설명했다. 방송 작가는 이러한 상황이 과태료 처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어 디자이너 역시, "저희 프리 아니거든요. 제가 출퇴근도 있고...정액권...판매하며 조기 퇴근권 1시간에 생겨요. 근데 그런 걸 프리랜서라고 하고"라며, 출퇴근 의무, 청소 등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 정규직에 부여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비판했다.

방문 가전 서비스 방문노동자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근로자처럼 관리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출근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매일 아침 전산 시스템을 통해 몇 건의 약속을 잡았는지 등을 관리·감독한다고 한다. 이처럼 계약서와 실제 업무 환경 간의 괴리는 기업이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통계조사원은 조사 때마다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계약서에는 책임 회피성 조항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산재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을 통계청이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 개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채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즉, 본래 노동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만큼의 전속성과 지시/통제관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기업은 프리랜서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엄격한 재추정과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로의 재편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술강사는 학교 공고를 보고 지원해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은 협의가 가능했지만 학교 시간표에 맞춰야 했다. 학교에 따라서는 3시간 수업 후 1시간 쉬고 다시 2시간을 일하는 등 비효율적인 시간표를 배정받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연극(마당극) 배우는 과거에는 극단 단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체제였으나, 지금은 공연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없어지고, 개런티(출연료) 형태로 받는 프리랜서 구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친분이 있는 경우 구두로만 계약하고 출연료를 명확히 얘기하지 않아 배우가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클래식 연주자는 레슨의 경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되며, 수업을 그만둘 때도 몇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한 주 전에 끝내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한다.

문화예술 부문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나 지위의 모호성은 오래된 과제이다. 문화예술 영역의 활동 특성은 전통적 임금노동형태로 보상이나 계약을 환산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국가들도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형태의 보상구조와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불안정성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 2) 수입 구조의 불안정성과 불합리한 비용 부담

프리랜서의 수입은 대부분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책정되므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적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서 경쟁의 심화는 결국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프리랜서 직군들의 노동의 보상 가치는 상승은 커녕 오히려 더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까지 개인이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된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을 못하면 아예 빵"이라고 말하며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토로했다. 특

히 "고객이 계약 유지를 1년 이상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내가 계약한 거에 120%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라고 밝혀, 성과가 소멸될 경우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방송 작가의 수입은 더욱 열악했다. 한 주에 7분짜리 영상 한 편을 만드는 데 20만원, 10분짜리는 28만원의 작가료를 받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는 말했다. "20년 차가 넘어버리니까...테이블의 개념은 없고 그냥 계속 그 돈인 거예요"라며, 연차가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비판한다.

업무 관련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영상 편집자는 어도비 구독료(월 8~10만원)와 각종 템플릿 구독료(월 20만원 이상)를 지출하며, 상업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 장비는 1,000만원을 호가한다고 밝혔다. 헤어 디자이너도 "가위도 한 자루에 기본 5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이며,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적어도 7자루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고가의 장비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잠식하고,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치어리딩강사는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많아봤자 1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조금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클래식 연주자는 레슨비가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연주자로서의 활동이 남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주 수입원인 레슨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 소득이 현저히 적다고 한다.

사진작가는 사진만으로 규칙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이나 마케팅 영역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기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무료로 사진을 찍어 주는 품앗이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중언어지원강사는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방과 후 수업 외에도, 5시간에 75,000원을 받는 통역 일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지만, 경력이 쌓여도 시급은 오르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투여되는 노동력과 시간을 표준화하여, 일종의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순수한 작업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위한 준비 및 대기시간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 3) 노동 시간의 역설: 자유로운 시간 관리와 초과 노동의 상존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지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은 종종 그 이면에 초과 노동과 상시 대기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편집자는 "돈을 좀 많이 당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많이 할 때는 "진짜 아침 7시 8시 이때 이때 자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개발자 또한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3주는 뒤에 못 갔죠. 주말에도 계속 나가고"라고 말하며 강도 높은 야근과 숙식을 경험했음을 밝혔다.

헤어 디자이너는 예약 손님이 다 끝난 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고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영업 시간 내내 매장에 머물러야 하는 노동의 특성 때문에 시간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이다. 특히 인턴 시절에는 아침 8시 40분에 출근해 밤 8시에 퇴근하고, 이후 교육과 연습을 위해 새벽 2~3시까지 남아있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미술강사는 수업 외에 집에서 수업 준비와 학생들의 수행평가 채점,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근무 시간 외 노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필라테스 강사도 일이 많을 때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주 3시간만 일하는 등 수입과 노동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센터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다 보니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겪고 있었다.

클래식 연주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공연을 위한 연습에 대해서 "연습을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하나 봐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관행화 되어 온 일종의 초과노동으로서의 연습시간에 대한 재인식을 하기도 하였다.

## 3. 프리랜서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들

개별 직종의 특수성을 넘어, 대부분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었다. 이들은 개인의 노력과 관계(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생존하며, 시장의 변화와 불합리한 관행 속에서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었다.

## 1)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 및 고립 문제

프리랜서 노동은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맥과 평판에 크게 의존한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개발자는 "대전 쪽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거의 네트워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개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많고"라고 말하며, 지역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방송 작가 또한 "지역은 또 워낙 좁다 보니까 아름아름... 쉬는 작가가 있으면 추천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라며 인맥을 통한 일감 확보가 보편적인 경로임을 밝혔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클라이언트 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소모와 갑질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헤어 디자이너는 "진짜 진상들이 되게 많아요"라며, "나 이만큼 썼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와 같은 고객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가사 일이에요...치매 등급 판 집 같은 경우는 치매가 아니야...청소로 밀어 넣어 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가사 노동을 요구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통계조사원은 통계청 조사 업무를 하면서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과 감정노동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연극(마당극) 배우는 작품 제작을 위해 관객들의 티켓 수익보다는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관객들은 대형 공연을 선호하게 되면서 소규모 연극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출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권력 구조를 겪기도 하며,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봐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 2) 건강권 문제: '몸'의 소모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시간 노동과 유해 환경은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상 편집자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돈을 좀 많이

당겨보겠다...무리"를 한 결과 "몸이 남아나지 하지 않더라고요"라며 건강 악화를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프리랜서 노동이 일반적인 노동과 달리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오롯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 머리는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스토리 작가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라며, 정신 건강 문제를 작가분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헤어 디자이너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목은 수술을 대부분...하고 그 하지 정맥은 그냥 기본이"라고 언급했다. 인턴 시절에는 샴푸 작업으로 인해 "손이...쭈글쭈글 60대 할머니 손"처럼 변하고, "겨울에 출근했을 때 그냥 주먹 한 번 쥐서 피 다 터뜨리고 일을 시작해요"라고 말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증언했다.

### 3) 미흡한 제도적 보호: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의 비극

프리랜서들은 법적 지위의 모호성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종은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헤어 디자이너는 "저희는 4대 보험도 되지도 않고 3.3% 떼다 보니까"라고 말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방문 가전 서비스 점검원 역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방송 작가는 "부당한 경우를 겪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야"라며,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얘가 나갈 때 그랬다더라"는 소문이 돌아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부당한 상황을 묵인해야만 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통계조사원은 과거에는 통계청이 산재보험을 들어줬지만, 몇 년 전부터는 본인이 직접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고용주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사례이다.

개발자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단점으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꼽았다.

일에 대한 마감 압박과 프로젝트 완수 책임 때문에 퇴근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 시간이 끝없이 확장되는 문제를 겪는다고 말했다.

#### 4) 기술발전과 불안정한 미래: 경제적 / 산업적 불안정성

프리랜서들은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정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 AI문제는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기술에 의해 숙련 혹은 일 자체가 대체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이나 영상편집과 같은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기술적 침식에 대한 우려는 이미 열악한 시장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 다 요즘에 몇몇 분들은 아예 이런 AI로 빠지고 그러니까 디자인 디자이너한테 안 맡기고 AI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긴 하는데”(아트디렉터)*

*“사실 원래 AI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순 반복 쪽에 AI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예술 음악 뭐 이런 쪽에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 써야 되는 그런 쪽은 사람이 많이 들어갈 거다 했는데 완전 반대됐잖아요.”(웹디자이너)*

*“그래픽을 15년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 20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만 20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권위자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막 다른 이제 이거 영상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비슷한 흥내를 내는 거야. AI 막 때려 넣고 템플릿 때려 넣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가에서 이 사람들이 한 건에 500만 원씩 받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 건에 5만 원 10만 원 받던 사람인데 이제 점점 이제 격차가 줄어드는 거고 그 사이에서 플랫폼이 이제 또 역할을 하는 거죠.”(영상편집자)*

### 소결: 정책과제

조사결과 대전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자율성'이라는 표면적 장점 이면에 고용, 소득, 건강, 제도적 보호의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의 능력과 관

계에 의존하며 생존하지만,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모순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및 보호 강화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성을 회피하는 기업의 관행을 규제하고, 실제 근로 관계에 부합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출퇴근 의무, 업무 지시, 성과 관리 등 종속성을 보이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헤어 디자이너와 방문 가전 서비스 점점 방문노동자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계약서상의 명시적 문구와 달리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통계조사원의 사례처럼 정부 산하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보험 가입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 2) 사회 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를 넘어, 모든 프리랜서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방문 가전 서비스 방문노동자의 발언처럼, 현재 일부 직종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이 시작되었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소득 불안정성과 건강 문제로 인한 노후 대비가 어려운 프리랜서들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PT 강사의 제안처럼, 민간 협회에서 남발되는 자격증 대신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문가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 3) 직종별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 및 불합리 조항 방지

웹소설 작가, 방송 작가 등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 계약을 개발하고, 불합리한 불이익 조항(마이너스 급여, 일방적 해지)을 무효화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가 언급한 '마이너스 급여'나 방송 작가가 겪는 '구두 해고' 사례는 표준화된 계약 시스

템이 없이는 개인이 기업의 불합리한 요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연극(마당극) 배우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친분 관계를 이용해 출연료를 명확히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계약에 표준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4)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PT 강사, 헤어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등 개인이 부담하는 고가의 전문 장비 구매, 보수 교육, 유튜브 등에 대한 직접 지원금 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업무에 필수적인 고가 장비 및 유지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상은 프리랜서의 소득을 잠식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는 결국 프리랜서 노동 시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클래식 연주자의 발언처럼, 어릴 때부터 예체능 교육이 단절되는 현실은 결국 음악을 향유하는 수요를 감소시켜 예술 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편적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통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5) 심리적 및 법률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 노동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신적 소모를 완화하기 위한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기에 체불 문제나 다양한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때, 노동청 등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인터뷰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홀로 싸워야 하는 '고립' 상태는 이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계약 및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상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사한 프리랜서들 간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정서 및 정보의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화를 통한 집단적 이해대변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06

## 결론: 정책 과제와 함의





# 제6장

## 결론: 정책 과제와 함의

### 1. 대전지역 프리랜서 노동실태 핵심 쟁점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는 프리랜서(독립노동자)들이 표면적인 ‘자율성’ 이면에 깊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1)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

대전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은 250.82만 원으로,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소득(364.08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표 4-16).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불안정성이다. 응답자의 50.8%가 월 소득 변동폭이 30%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표 4-19), 이는 단기적 일감이나 프로젝트 기반 수입 구조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일감 수주의 안정성이 곧 생계의 안정성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 2) 취약한 사회 안전망

사회보험 가입 현황은 프리랜서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2.1%, 산재보험 가입률은 10.3%에 불과하며(표 4-22), 응답자의 6.5%는 가입된 사회보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 질병, 재해 발생 시 개인의 삶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

응답자의 63.7%가 근골격계 질환을, 61.5%가 수면장애 및 만성피로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이 나타났다(표 4-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14.6%는 병가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나 대체자를 필요로 하거나, 11.0%는 병가 활용이 거의 어렵다고 응답하여,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4-33).

### 4) 불공정 거래 만연 및 낮은 대응력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43.8%만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응답했으며 (표 4-14), 이는 계약 투명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가장 흔한 부당 사례는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적인 업무 지시'(17.8%)였으며, 부당 경험 시 33.8%가 '그냥 참고 넘긴다'고 응답하여,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노동자가 불공정 관행에 대해 낮은 대응력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표 4-29, 4-30).

### 5) 낮은 정책지원 만족도

대전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 정책 지원'에 대해 7점 만점에 3.41점이라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4-39). 실질적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중간지대에 위치한 프리랜서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대전시 차원의 정책 체감 효과나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의 마련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프리랜서 노동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 적절한 오추정된 집단(가짜프리랜서)과 진성 프리랜서 집단이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투트랙의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 전자는 오추정된 집단을 제대로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계약의 공정성과 과도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 2. 프리랜서 정책 과제 제언

대전지역 독립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및 당사자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법적 기반 구축 (노동자성 인정 및 공정 거래)이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성을 가진 '가짜 프리랜서'를 식별할 수 있는 지역적 행정 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노동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포괄적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복지 지원)이다. 낮은 소득 안정성과 사회보험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 및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미래 지향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역량 강화 및 지원 거점)이다.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무, 법률,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거점의 기능을 확장하고, AI 기술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노동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또한 심리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함이나, 일/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집단적 이해대변 창구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프리랜서들 간의 네트워크와 나아가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1) 노동자 지위 추정제 도입 및 불공정 거래 근절 (권익 보호)

#### ① 정책 제언 1-1: '종속적 계약자' 식별을 위한 노동자성 추정 가이드라인

프리랜서 노동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이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오분류하는 관행이다. 근로계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프리랜서 관련 정책 요구에서 나타나는 핵심 요구이다.

실제로 중앙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혹은 '일터 기본법' 등과 같이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제의 흐름에 맞춰 지역 조례 및 행정 지침을 통해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에 대한 규모 파악과 지원 정책 그리고 제도적 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2%가 '일부 자율성이 있지만, 대체로 정해진 매뉴얼이나 지시에 따라 일한다'고 응답했으며(표 4-27), 이는 계약 형식과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는 '가짜 프리랜서' 규모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이들은 명백히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 납부나 용역 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오분류 문제 해결은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ICSE-18 분류 체계를 통해 전통적 고용관계에 포섭되지 않는 '종속적 계약자' 범주를 신설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침'에서 플랫폼이 노동자에게 지시나 통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법제도를 2026년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대전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중앙 정부의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단일 고객 의존성, 업무 지시 및 관리, 보수 결정 통제 등 종속성 지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지역 고유의 '종속적 계약자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공공기관 용역 계약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나아가,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고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탈세와 다름없는 행위로 보고 잘못된 소득 신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되므로,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징수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득 오분류 시정을 위한 정기적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 역량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② 정책 제언 1-2: 직종별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공정 조항 무효화 제도

계약의 투명성 확보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다. 대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6.2%가 서면 계약서 대신 구두 계약이나 비공식적 합의에 의존하고 있으며(표 4-14), 계약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지적 재산권 귀속'과 '계약 해지 조건', '수정/보완 요청 범위' 등으로 나타났다(표 4-15). 이러한 계약의 모호성은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된다.

디자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방송 작가 등 고위험 직종을 대상으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계약서 개발 및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동시에,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해지, 지

적 재산권 침해, 불합리한 수정/보완 요구, 그리고 성과 소멸 시 노동자에게 오히려 비용을 전가하는 '마이너스 급여'와 같은 불공정 조항에 대한 무효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적 기준의 존재는 나아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선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된다. 현재 법에는 도급제 계약에 대해서도 평균적인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표준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작업 시간 및 단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태로도 공정한 거래 관행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다. 일본은 프리랜서 보호법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주 시 보수와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급 지연, 미지급, 일방적인 감액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국내에서도 서울시나 경기도 등은 프리랜서 계약의 공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의 마련 및 보급 등에 나서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공공 프로젝트 및 용역 계약 시 표준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 시 행정적 불이익을 명시하는 지역 조례를 마련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 ③ 정책 제안 1-3: 미수금/임금 체불 신속 해결을 위한 '권리구제 지원 사업'

프리랜서들은 미수금, 계약의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하고도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놓여있다. 부당 사례 발생 시 33.8%가 '그냥 참고 넘긴다'고 응답했으며 (표 4-30), 법적 소송(2.5%)이나 공적 지원센터(3.1%)를 통한 대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노동자성이 불분명하여 노동청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개인이 법적 투쟁에 나설 경우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프리랜서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프리랜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이 사업은 미지급된 보수(미수금) 및 대금 체불 피해를 겪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소액 심판 청구 소송, 가압류 신청 등 법률 절차를 지역 노동센터가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예술인 신문고와 같은 기존 중재 기구의 실질적인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수금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참고하여, 대전시 공공 및 지역 중소기업

업 용역 계약 시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뒤 작업 완료 후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프리랜서의 소득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2)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득 안정화 지원 (복지 증진)

### ① 정책 제안 2-1: 지역 특화 저소득 프리랜서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 확대

대전 프리랜서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불안정한 수입'(21.3%)과 '사회 보험/복지 혜택 부족'(13.2%)이다(표 4-36).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낮은 가입률(각각 12.1%, 10.3%)은 이들이 실업이나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표 4-22).

대전시는 중앙 정부의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전면 확대' 및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 차원의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사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

**저소득 프리랜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중앙 정부는 저소득 특고 종사자 및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전형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 모델은 소득 기준을 설정하여 지방비를 매칭 투입함으로써, 저소득 프리랜서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소득 파악 시스템 연계:** 중앙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책(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제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득 파악 시점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 또는 면제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② 정책 제안 2-2: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 상병수당 및 유급 병가 확대

프리랜서 노동의 특성상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즉시 중단되므로, 질병이나 부상은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sup>1</sup> 대전 프리랜서의 대다수가 업무로 인한 신체적 질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표 4-31), 병가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이다.

대전광역시시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대전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률 방식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에 한정되면서 제도 밖 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고용관계 특성상 유급 병가 사용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당사자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도록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중앙 정부 정책(총 150만 원 지원)에 더해 서울시의 추가 지원 사례(90만 원 추가 지원)를 벤치마킹하여 '노무제공자 출산육아돌봄 지원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 프리랜서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정책 제안 2-3: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공제 및 금융 지원 제도 마련

프리랜서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퇴직연금제도가 없어 노후 준비 정도가 현저히 낮고, 개인의 저축 및 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마련은 필수적인 정책 과제이다.

**노동공제사업 설립 및 활성화:** 대전시는 노동 당사자들의 자조와 연대에 기반한 자율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내 노동공제 설립 및 활성화 관련 조항 추가 요구에 발맞춰 지역 차원에서 공제사업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지원을 통한 목돈 마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청년층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회를 통한 사업지원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일감이 끊기거나 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일시적 중단, 계약된 보상의

지급지연 등의 상황에 놓이기 쉬운데, 프리랜서들은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의 사채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나아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공제회 등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 저금리 소액대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면,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들의 생활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 및 주거 지원 확대:**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 및 주택 청약 등 공공 복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과 차별을 상시적으로 경험한다(설문조사 자유의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경력·소득활동 증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 내 금융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하여 금융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중앙 정부의 노력을 지역 차원에서 보완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진흥 특례보증대출 예술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업예술인의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금리대출 및 이차차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프리랜서 케이스로서 확대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 3) 지역 기반 인프라 강화 및 역량 지원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 ① 정책 제안 3-1: 대전 프리랜서 노동자 종합 지원 거점 구축과 네트워크 지원

대전 프리랜서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립감/소속감 부재와 더불어, 불공정 거래, 세무, 복지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 문제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다. 대전 실태조사 결과, 센터에서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 1순위는 '세무상담 및 교육'(19.6%)과 '일과 관련된 고충 및 법률적 지원'(19.4%), '노동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18.8%) 순이었다(표 4-42).

이는 프리랜서들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전문적인 행정 및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복합적인 지원 플랫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기존 이동노동자 센터 등 인프라를 강화하여, 단순 휴식 공간이 아닌 세무, 회계, 법률, 복지, 일감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전 프리랜서 노동자 종합 지원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센터 이용 경험은 6.3%로 저조하지만, 잠재적 이용 의사는 52.0%로 매우 높으므로(표 4-40), '특정 업종만 이용하는 곳 같다'는 인식을 해소하고 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표 4-41).

종합 지원 거점에는 세무사, 노무사, 심리 상담 전문가 등을 상주시켜 정기적인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노동계약 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시범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 중 다수가 프리랜서들의 고립된 노동형태에서 오는 심리적 고립감이나, 정보의 부족 등을 언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프리랜서들 간의 교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지자체는 단순하게는 프리랜서들의 소모임 지원이나 단체교육사업, 그리고 경기도의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와 같은 교류 박람회(프리랜서와 프리랜서, 프리랜서와 사업체 간의 교류 지원사업)할 수 있는 예산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온라인 플랫폼 및 위에서 언급한 지원센터가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랜서들 간의 교류를 통해 고립적 상황을 극복하고, 정보 교류와 나아가 조직화/집단화를 통한 이해대변으로서 나아가는 자력화를 지원한다면 지역 프리랜서들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정책 제안 3-2: AI/디지털 전환 대비 맞춤형 역량 강화 및 전환 교육 지원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은 프리랜서 시장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저숙련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기술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전 프리랜서들은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 평균 3.54점(7점 만점)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으며, 특히 IT/소프트웨어개발(3.00점), 엔터테인먼트/미디어(3.12점)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났다(표 4-38).

첫째, AI 취약 직종 전환 교육: 저숙련 및 단순 과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필수 장비 구매 지원: 영상 편집자, 헤어 디자이너 등 고가의 전문 장비 구매가 필수적인 직종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유지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상이 소득을 잠식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지자체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여, 시민들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다.

### ③ 정책 제안 3-3: 지역 기반 일감 연결 플랫폼 구축 및 경력 증명 시스템 제도화

대전 프리랜서의 일감 확보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 또는 지인 소개'(24.5%)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는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며 일감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표 4-26, 4-36).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https://www.gg.go.kr/free/web/main.do>)'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수요와 대전 프리랜서 역량을 투명하게 매칭하는 '지역 기반 일감 연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일감 정보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 공공 프로젝트 발주 시 플랫폼 활용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안심결제 서비스를 통합 탑재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핵심 요구 사항인 '프리랜서 경력·소득활동 증명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 활동 실적 및 프로젝트 참여 내역을 기반으로 '프리랜서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지역 내 금융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 확대 및 주거 지원 시 소득/경력 증빙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금융 소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 〈참고문헌〉

- Discenza AR, Frosch M, Walsh K, 2023, Ident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18 through labour force surveys: Main Findings from the ILO pilot studies in Uganda and Peru,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Eurofound, 2013, Self-employed or not self-employed? Working conditions of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Dubli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Horodnic A, Williams CC, Horodnic AV, 2023, Extent of dependent self-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Labour Authority.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18) Manual, last updated: August 2023.
- Williams CC, Lapeyre F, 2017, Dependent self-employment: Trends,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in the EU, Employment Policy Department Employment Working Paper No.22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서정희·박경하, 2016, 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한국사회정책, 23(3), 49-77.
- 이승호·이병희·진성진·박수민·송민수·황선웅, 2025, 노무제공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정흥준·장희은, 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10.
- 통계청, 2021,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보도자료 ('21.12.29).



5. 귀하가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직업을 서술해주세요  
( )

6.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유성구      ② 서구      ③ 중구      ④ 동구      ⑤ 대덕구      ⑥ 기타 지역( )

7. 귀하의 업무상 주요 활동지역은 어디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유성구      ② 서구      ③ 중구      ④ 동구      ⑤ 대덕구      ⑥ 대전 전지역      ⑦ 기타( )

8. 현재의 일을 본업으로 수행하고 계십니까?

- ① 본업이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② 본업이고, 부업으로 다른 일을 병행한다  
③ 부업이고, 다른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다.

9. 현재의 일을 하기 이전에도 경제활동을 하셨습니까?

- 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취업준비, 학생, 주부 등)  
② 정규직 임금노동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③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④ 특수고용종사자/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다  
⑤ 개인사업 또는 자영업을 했었다  
⑥ 기타 ( )

### 경력 및 계약구조

10. 귀하가 프리랜서로 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11. 프리랜서로서의 일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본인의 전공과의 연계      ② 유연한 근무 시간과 장소  
③ 더 높은 수입의 가능성      ④ 자율성과 독립성  
⑤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 개발(커리어 향상)      ⑥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⑦ 기존 직장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서      ⑧ 개인적인 사정(육아, 건강, 돌봄 등)  
⑨ 기타 ( )

12. 보통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서면 계약서 작성      ② 구두 계약      ③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한 비공식 합의  
④ 플랫폼 이용약관 동의      ⑤ 별도의 계약 없이 작업      ⑥ 기타 ( )

13. 계약시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습니까?

	해당없음	매우 불명확함	다소 불명확함	대체로 명확함	매우 명확함
업무 범위와 내용	①	②	③	④	⑤
보수 지급 방식 및 금액	①	②	③	④	⑤
작업 기간 및 마감(계약기간)	①	②	③	④	⑤
수정/보완(a/s) 요청의 범위	①	②	③	④	⑤
계약 해지 조건	①	②	③	④	⑤
지적 재산권 귀속	①	②	③	④	④

소득과 노동시간

14. 귀하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요

1) 현업을 통해 얻는 월 평균 소득	약 ( )만원
2) 업무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공간임대, 장비·프로그램 비용, 교통비 등)	약 ( )만원
3) 귀하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희망하는 최소한의 월 소득은	약 ( )만원

15.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일한 시간(시급)    ② 월급    ③ 수행한 일감의 개수(건별 노동)    ④ 프로젝트/미션 단위(포괄 계약)    ⑤ 기타( )

16. 귀하는 어떤 기준으로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정부나 협회 등에서 책정한 공식적인 표준 금액이 존재    ② 비공식적이지만, 관습적으로 형성된 기준 금액이 존재  
 ③ 별도의 기준 없이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    ④ 플랫폼 알고리즘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동  
 ⑤ 기타 ( )

17. 귀하의 월별 수입 변동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안정적 (변동폭 10% 미만)    ② 대체로 안정적 (변동폭 10%이상 - 30% 미만)  
 ③ 다소 불안정 (변동폭 30%이상-50% 미만)    ④ 매우 불안정 (변동폭 50% 이상)  
 ⑤ 기타 ( )

18. 다음 중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국민연금(직장가입자)    ② 국민연금(지역가입자)    ③ 건강보험(직장가입자)    ④ 건강보험(지역가입자)  
 ⑤ 고용보험    ⑥ 산재보험    ⑦ 가입한 사회보험 없음

19. 귀하의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달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요

근무 일 수	1) 현재 일주일 평균 근무일 수	주당: ( ) 일
근무 시간	2) 현재 하루 평균 근무시간	하루: ( ) 시간



26.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지금의 업무로 인해 사고나 질병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근골격계 질환(근육통, 골절, 디스크 등)	①	②	③
위장관 질환(소화불량, 복부 통증 등)	①	②	③
호흡기계 질환(기침, 폐렴, 기관지염 등)	①	②	③
청각관련 질환(난청, 이명 등)	①	②	③
피부질환(피부염이나 화상 등)	①	②	③
비뇨기계질환(방광염 등)	①	②	③
신체손상(절단, 베임, 찢림, 끼임 등)	①	②	③
수면장애, 만성피로	①	②	③
심리적 질환(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	①	②	③

27. 귀하가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어 계십니까?

내용	없다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업무의 위험도가 높아서 사고의 위험이 큼	①	②	③	④	⑤
불편한 자세로 오래 일을 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제 시간에 식사를 챙기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화장실 등 생리활동을 자유롭게 해결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춥거나 더운 야외 날씨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8. 귀하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휴가나 병가 등의 활용이 가능하십니까?

- ①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함
- ② 근무일정 조정 등 협의를 통해서 가능함
- ③ 휴가나 병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지출이나 대체자를 구해야 함
- ④ 휴가나 병가 활용이 거의 어려움
- ⑤ 기타 ( )

29. 아래의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란에 체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니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객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소비가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객의 평가(후기 등)가 업무성과 평가나 수입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스로가 개인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주어지더라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프리랜서(독립노동자)를 위한 의견이나 정책 요구를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답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례로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자 하니, 답례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하시고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모든 조사가 종료된 이후 일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답례품이 필요 없으신 분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다음의 개인 정보를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및 제3자(전문기관)에게 제공,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로 기프티콘 발송,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사업 홍보 자료 발송
- 수집항목: 휴대전화 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휴대전화 번호

프리랜서(독립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및 정책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층면접은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뷰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심층면접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해드립니다.**

면접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은 아래 동의해주시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심층면접 참여

심층면접 미참여

휴대전화 번호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 연구 정책간담회 토론회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간담회

토론회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 토론문 1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정책간담회 토론문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들어가며

862만 명이라는 숫자, 월평균 146.7만 원이라는 소득, 62.7%의 계약서 미체결률. 발제문의 그래프와 표를 보면서 청년유니온에서 만난 프리랜서분들을 떠올렸다. 밤을 새워 시안을 수정하고, 플랫폼 수수료 20%를 내면서도 “그래도 일감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일러스트레이터 Y,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임신한 몸으로도 일을 멈출 수 없었던 독립기획자 M, 발가락이 부러졌는데도 김스하고 무대에서는 동료들 지켜봐야 했던 배우 D. 오늘 토론문에서 숫자들 뒤에 있는 이름과 얼굴을, 그리고 내가 들었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 1. '권리 밖 사각지대'의 구체적 얼굴들

#### 계약 없는 노동의 일상화

발제문에서 지적한 62.7%의 계약서 미체결률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는 프리랜서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은 클라이언트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괜히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디자이너 J는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면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걸 아는데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 수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배우 D는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전에는 그냥 '3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이런 식이었어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하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배우 D는 조연출로 계약했는데 오퍼레이팅까지 하라는 추가 업무 지시를 받았고, 디자이너 J는 무리한 수정 요청으로 시달렸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니 이에 대응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발제문에서 제시된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25.7%)', '부당한 지속적인 수정 요구(17.3%)'가 바로 이들이 겪은 현실이다.

## 부당대우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

발제문의 '부당대우 유경험 시 법적 대응 5%'라는 수치는 프리랜서들이 처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리랜서들은 지인 소개나 업계 내 추천으로 관계망 속에서 일감을 받는다. 한 번의 갈등이 평판에 타격을 주면, 그 여파는 연쇄적으로 다른 일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독립기획자 M은 이 평판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같은 업계 사람의 평판을 물어 봐요. 그러면 누가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M이 클라이언트와 있었던 부당한 일을 SNS에 올렸을 때 주변에서는 "그런 거 사람들이 좋게 안 본다, 누가 너랑 일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부당함을 공론화하는 순간, 좁은 업계 안에서 소문이 퍼져 다음 일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디자이너 J 역시 "유명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을의 입장"이라며, 무리한 수정 요청을 받아도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 부당함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프리랜서들에게 '평판'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배우 D는 계약에 없던 오퍼레이팅 업무를 거부했다가는 다음 캐스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디자이너 J는 끝없는 수정 요청에도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침묵했다. 발제문에서 제시된 부당대우 유형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일감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침묵을 선택한다.

## 2. 온라인 플랫폼: 기회인가, 착취인가

### 과도한 수수료와 감시 체계

발제문에서 지적한 평균 14.5%의 플랫폼 수수료는 현장에서는 더 가혹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일러스트레이터 Y는 크몽에 20% 수수료를 내는데 "너무, 너무해요."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플랫폼이기도 해요"라고 했다. 초보 프리랜서는 포트폴리오도 없고 관계망이 없기에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일감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다. 그래서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Y는 "채팅방 안에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다든지 메일을 주고받으면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감지해서 경고를 줘요."라고 했다. 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플랫폼 이

용이 제한된다. 프리랜서들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아 수수료를 피하려는 시도조차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플랫폼은 일감을 중개해 주면서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모든 소통을 통제하고 감시한다.

일본어 강사 E는 숨고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 플랫폼은 견적서를 보낼 때마다 캐시가 필요해 58,000원부터 119,000원까지 충전해서 사용한다. 크몽처럼 거래 수수료를 떼는 방식은 아니지만, 일감을 얻기 위한 초기 진입 비용이 필요한 구조다. 일을 따내기도 전에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또 결제해야 하는 비용이 따로 있다고 했다.

### 단가 후려치기와 시장 왜곡

디자이너 S는 "크몽 같이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가 많아져서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데, 새로 프리랜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으니, 시장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플랫폼에서 형성된 저가 시장은 업계 전체의 단가 기준을 무너뜨린다. 클라이언트들은 "크몽에서는 이 가격에 하던데요?"라며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도한다. 경력이 있는 프리랜서들도 플랫폼에서 형성된 저가 시장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플랫폼이 만들어 낸 저가 경쟁 구조가 전체 프리랜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3.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과 비용 부담

### 창작 노동의 특수성

배우 D는 "공연 계약서에는 작업 기간이 '연습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명시되지만, 작품 완성에 필수적인 수많은 연습, 리허설, 준비 시간은 계약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많은 부분이 무급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했다.

움직임 창작 예술가 L은 "창작은 할당량이 없는 노동이에요. 머릿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생각들, 그것을 형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많은 시간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라고 말했다.

### 인건비 책정의 불공정

독립기획자 M의 사례는 프리랜서 인건비 책정의 불합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예술위원회 주관의 지원사업 기준으로 기획자는 보통 전체 사업비의 10%를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다. 2천만 원 사업이면 200만 원이다. M은 이렇게 반문했다. "8~9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200만 원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굶어 죽으라는 거지."

더 심각한 것은 10%의 인건비 허용이 아주 잘 쳐준 경우라는 점이다. 여타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 기획자나 대표자의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되려 자부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프로젝트가 길어지면 사람들에게 밥이나 커피를 사야 할 일도 많아지는데, 이런 비용마저 기획자의 인건비 10%에서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 작업 과정의 비용 부담

발제문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의 21.3%를 본인 소득에서 지출한다. 플랫폼노동자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 영상 편집자는 작업을 위해 어도비 구독, 다빈치리졸브(색보정용), 산돌폰트, 아트리스트(음악), 프리픽(이미지, 영상소스), 구글드라이브, 마이박스, 장비 업그레이드 등으로 많은 비용을 선지출하고 있다.

일본어 강사 E는 숨고 플랫폼에서 일감을 따기 위해 견적서를 보낼 때마다 필요한 캐시를 58,000원부터 119,000원까지 선결제로 충전해야 한다. 일러스트레이터 Y 역시 크몽에서 일감을 받기 위해 플랫폼 수수료 20%를 내야 하는데, 이는 작업이 끝난 후 수익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결국 본인의 소득에서 나가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플랫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리랜서들은 직종을 막론하고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일하고 있다. 화가 T는 "아트 페어에 나갔지만, 작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을 때는 너무나 진이 빠지고 절망적"이라며, "작품에 쓰인 재료비, 참가비, 며칠 간의 체류비 등 금전적인 지출"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감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작업 비용까지 자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프리랜서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몬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혹은 수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프리랜서들은 생존과 창작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해야 한다.

## 4. 제도적 사각지대의 구체적 양상

### 사회보험의 공백

독립기획자 M은 임신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들은 육아휴직하면 돈도 나오고 그런데 나는 그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남들만큼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은데, 뭔가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어떤 혜택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니까." 사진작가 찌니는 "출산 전까지 바짝 벌어들여야 해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이 없으니까... 좀 서글프죠"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 안전과 건강의 사각지대

배우 D의 사례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료 배우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했어요. 뼈 붙이는 수술까지 하고 깁스하고 했는데 2주 만에 무대에 섰어요. 재활이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부상이 생겼을 때조차도 공연을 빠지면 무척 임하다는 인식과 다음 캐스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배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대에 서려고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었다고 한다.

## 5.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

### 현장이 증명하는 제도적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프리랜서들의 현실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명확하게 증명한다. 발제문에서 프리랜서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규제(83.1점) ▲공정계약을 위한 기업 모니터링 및 감독(79.7점) ▲성희롱·감정노동·괴롭힘 등 법률 적용 마련(79.5점)이 꼽힌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다.

**첫째, 공정한 계약 체계가 필요하다.** 62.7%의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 일하면서 겪는 추가 업무 지시와 무리한 수정 요청. 배우 D와 디자이너 J의 사례는 계약서 부재가 만든 부당대우의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플랫폼 수수료 규제와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20% 수수료, 선지불 진입 비용, 알고리즘 감시 시스템. 플랫폼은 유일한 일감 창구이면서 동시에 착취 구조를 갖

추고 있다. 이것이 1순위 정책과제로 나타난 이유다.

셋째, 부당대우로부터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 대응률 5%는 평판 시스템에 묶인 프리랜서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준다. 개인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넷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 보수 기준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없이 출산을 준비하는 기획자 M, 8~9개월 프로젝트에 200만 원을 받는 불합리한 인건비 책정, 월 평균 146.7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이는 제도적 배제의 결과다.

## 나가며

발제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EU 지침(2024)처럼 '플랫폼노동자'와 '플랫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프리랜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불안함과 싸우고 있었다. 862만 명의 프리랜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 토론문 2

김미선  
보험설계사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정책간담회 토론문

### 김미선 (보험설계사)

저는 프라임에셋 15년 차 보험설계사 김미선입니다.

제가 처음 보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5년 전 아이를 출산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가진 회사는 없었습니다. GA(보험대리점)를 선택한 이유도 다른 삼성생명이나 현대해상처럼 한 회사만 다니는 보험사를 원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도 외근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하고 아이가 아플 때 결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아이 아파서 입원할 때 결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은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보험설계사 등의 영업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육아와 병행하면서 영업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보험업 자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폐해(승환계약, 과도한 선물과 수수료 대납, 부실한 고객관리로 인한 고아계약만연, 실적압박으로 인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조기 퇴사, 원수사처럼 병력사항으로 계약 거절 시 대안사항 없음)로 인해 저희 본부처럼 정석처럼 정도 영업을 하고 고객관리를 하는 조직과 설계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개 고객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연결되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보험설계사는 60만 명이지만 저희 본부처럼 손보생보협회에서 인정하는 우수인증설계사가 많은 조직과 명장이 있는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제도란 손보협회에서 8년 전부터 전문성, 건전모집, 정착률 등 주요 지표가 우수한 설계사에게 부여하는 공식 인증제도로 동일 회사 3년 이상 재직자로 생손보 합산 13회차 유지율 90% 이상이며 연 소득 4,500만 원 이상이며 불완전 판매 모집질서 위반 및 보험사기가 없는 자로 매년 선발하여 현재 22,260명이며, 5년 이상 달성한 자는 우수인증설계사명장을 선발(3,967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저는 우수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된 8년 전부터 8년 차 명장입니다. 8년 차 명장은 전국 5백여 명입니다.

이렇게 제가 안정적으로 장기근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압박이 없으며 정도

영업을 추구하는 조직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영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고충은 고객 상담 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 기간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집 끝나고 가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고객님께 배려를 구하고 급할 때는 아이를 데리고 상담 장소에 가서 상담을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연구자료를 보니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곳이 있던데 쉼터 옆에 돌봄시설이 있다면 이럴 때 잠깐잠깐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료에 업체로부터의 갑질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거수한 보험료 DB 손해율이 높은 경우 설계제한, 콜적부 등 계약업무 자체를 마비키는 제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마비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할 수 없고 결국 퇴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험사의 이기적인 이득취득때문에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부당함으로 설계사 정착률이 낮아지고 고객입장에서는 계약관리자를 잃어버려 고아계약이 만연하게 되며 결국에는 고객은 보험사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일부 보험사 지점장은 청구를 못 하게 막는 일도 있어서 이는 예전부터 뉴스나 기사에도 나와서 문제가 심각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보험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폐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갑질로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게 부담시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하는지 보니 여러 가지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씩 개선되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발돋움으로 연구하시고 정책토론회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합니다. 정작 프리랜서는 생계로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독립노동자는 업무환경에서도 수입구조에서도 독립되어 보호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연구와 토론회가 있어 개선의 여지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포함 대부분 프리랜서가 생계를 위해서 시간에 쫓겨 업무를 해서 이와 같은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음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 토론문 3

**이산하**

영상 제작(편집)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정책간담회 토론문

### 이산하 (영상 제작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서울 경기에서 영상 제작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올해 3월 대전으로 이사 온 이산하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겪었던 현실과 어려움, 그리고 지역 도시에서 느꼈던 특수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질적으로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는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 첫째, 최저임금 부재로 인한 끝없는 단가 경쟁의 현실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적용은 물론 최저임금 개념이 부재합니다. 그 결과, 같은 분야·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누가 더 싸게 하느냐'는 무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특히 경험이 많이 없는 신규 프리랜서는 초저가로 계약을 맺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반대로 숙련된 프리랜서는 낮아지는 전체 시장 단가때문에 경력·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역 시장은 규모가 작기때문에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하고 파급력도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결국 지역 산업의 질적 하락과 기술자들의 탈지역화를 낳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단가, 공정 단가 기준, 행정·공공기관의 표준계약 준수 의무 등은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입니다.

#### 둘째,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와 노동 3권 행사 불가 문제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적 지위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당한 계약 파기나 체불이 있어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며 단체를 조직해 교섭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 3권 행사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일은 노동자처럼 하고, 권리는 사업자처럼 책임지라"는 모순적 구조입니다. 특히 영상 제작, 디자인, IT,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작업물 수정 요구, 일정 변경, 대금 지급 지연 등이 빈번하지만 이에 대해 구조적인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은 개인이 떠안

아야 합니다.

지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프리랜서 분쟁 조정 지원센터, 계약 표준안 강화, 권리 교육 및 법률 지원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에서 일감 확보가 어려워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영상 제작 산업, 콘텐츠 산업, 디자인 분야는 지역 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많은 프리랜서가 “어쩔 수 없이” 서울·수도권의 프로젝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지역 산업이 뿌리 내리지 못하며, 지역 경제에 생산적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역 차원의 콘텐츠 제작 발주 확대, 지역 창작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기관과 프리랜서 연계 사업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립감입니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혼자 일하고, 흩어져 있으며, 공식적인 공동체나 조직 구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큽니다. 직무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지속되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공정한 시장 참여가 어렵고, 계약·세무·업무관리 등에서 혼자 모든 부담을 감당합니다.

프리랜서 커뮤니티 센터, 코워킹 공간 지원, 네트워킹 사업 등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입니다. 심리적 고립을 완화하고, 전문성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프리랜서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무실 임차비 문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무공간 확보 비용을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임차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프리랜서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구조이며,

장비·서버·소프트웨어 등 비용까지 부담해 경제적 압박이 매우 큽니다. 일부 프리랜서들은 함께 임차료 등 사무실 유지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하는 ‘쉐어오피스’ 형식으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유지 비용 자체가 버겁고 고질적인 단가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자치단체가 프리랜서 특화 공공 사무공간 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 창작·제작 장비 대여 인프라 제공 등을 마련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는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인재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핵심 주체입니다. 지방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으로 제도를 설계해 주신다면,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지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산업은 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혼자가 아닌' 지역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 토론문 4

**이영선**

프리랜서 강사



## 대전지역 강사단 중심 프리랜서 생태와 과제

이영선 (프리랜서 강사)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전 프리랜서(독립노동자) 포럼에서 토론자로 발표하게 된 프리랜서 강사 이영선입니다. 저는 특히 강사단 중심의 프리랜서 환경을 경험해 왔기에, 그 관점에서 대전 프리랜서 생태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대전 프리랜서 시장의 현황과 특징

먼저 대전지역의 프리랜서 생태를 살펴보면 대전은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어 교육 강의 중심의 프리랜서 활동이 활발합니다. 강사단 프리랜서의 경우 평생교육원, 공공기관 교육,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시장은 수도권 대비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기관의존도가 높고 두 번째 강사비나 프로그램 단가가 낮아 지속 가능한 소득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 프리랜서 플랫폼 및 에이전시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즉 수요는 꾸준하나 생태계 기반은 약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2. 강사단 중심 프리랜서가 겪는 주요 어려움

첫째 단가의 불안정성과 소득의 계절성을 볼 수 있는데 강의는 계절별 기관별 예산 편성 시기에 따라 물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1월, 12월에 강의가 몰리고 여름 가을은 상대적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강사단 프리랜서에게 안정적인 연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대전지역 강의료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상 폭도 제한적이며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강의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기관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강의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콘텐츠 재구성, 교육학적 스킬, 디지털 역량 강화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은 프리랜서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경력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 인정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문 강사에 대한 인증제, 표준화된 역량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표준계약서 노무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를 주장하기 어려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인데 표준 강의 계약서 보급, 강의로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등 프리랜서 강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런 곳에서 지원한다면 강사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전 내 강사 커뮤니티가 활발하지 않으며, 협업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이 고립된 채 활동하고,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강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원천징수, 경비 처리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지원 없이 혼자 해결하기엔 부담이 큼니다.

### 3. 대전 프리랜서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 대전은 KAIST,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인프라가 뛰어납니다. 이를 활용해 지역형 협력센터를 구축한다면 일자리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사단 표준계약 및 노무 가이드 도입 확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와 강사비 지급 기한 명시 등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란 이유로 노동적 권리가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대전은 교육기관이 많아서 지역 단체 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으로 강의 콘텐츠 기획 워크숍이나 교수법 교육을 제공한다면 프리랜서 개개인의 품질을 높여 지역 교육 생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대전 프리랜서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협업 생태계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프리랜서도 노동시장 구성원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대, 건강보험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프리랜서 환경 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 4. 대전 강사단 프리랜서의 미래 과제

대전 프리랜서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모델 구축으로 과학도시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만의 전문 콘텐츠 개발 필요성입니다.

둘째 단순 강의 제공을 넘어 전문직으로서의 기준을 확립하여 강사단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해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이 필요합니다.

넷째 강사단이 뭉쳐야 협상력도, 콘텐츠 개발력도 향상되므로 프리랜서 공동체 구축이 필요합니다.

#### 5. 맺음말

대전의 프리랜서 강사들은 지역 사회와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현실처럼 강사들이 안정적 기반 없이 뛰어난 역량만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강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지역의 미래가 견고해집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안정성, 보상, 권리 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사회, 기관, 정책, 그리고 프리랜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한다면 오늘, 이 토론이 대전 프리랜서 강사단의 권익 강화와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현장에서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대전의 프리랜서 강사단의 생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강사단 프리랜서가 전문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 토론문 5

**이영진**

생활가전 렌탈 방문점검원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정책간담회 토론문

### 이영진 (SK인텔릭스 생활가전 렌탈\_방문점검원)

반갑습니다. 저는 SK인텔릭스의 생활가전 렌탈전문회사 소속의 대전 반석지국의 방문점검원인 이영진 MC입니다. SK인텔릭스의 제품인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침대 매트리스 등을 고객에게 렌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K그룹의 계열사로 AI기반 로봇공기청정기인 나무엑스도 새롭게 출시하여 렌탈하고 있어 업계 2위 자리를 지키면서 업계 중 독자적인 렌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만든 일명 노예계약서인 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계약 갱신으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직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MC입니다.

저희 MC (멤버스 케어)의 업무는 각 가정으로부터 상가 식당 회사건물 등에 정수기의 설치된 생활관련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터 교체 등 점검 관리하고 렌탈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주어지는 계정(정수기 외 렌탈제품 총칭)의 점검 수수료와 렌탈영업 수수료만으로 기본급도 없이 최저임금의 반(약 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수수료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 수수료가 기본적인 소득의 주된 요인으로 최우선으로는 기본 생계의 수단인 최소한의 계정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조직장(지국장 팀장)은 각 지역의 지국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의 점검 계정과 MC들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장들은 회사소속의 정직원이며 월급을 받는 관리자입니다.

MC의 업무를 도와 점검과 회사의 계정관리를 해야 하지만 생계의 기본인 계정을 MC에게 회사의 계정이라는 말을 빌미로 빼앗아 마음에 드는 MC에게 비합리적으로 한 MC에게 몰아주는 계정 갑질을 하며 상하관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력을 무시한 채 제한된 계정으로 인원 충원을 하여 계정보장 하지 않고 조정을 하며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점검 영업하는 MC를 기계의 소모품처럼 생각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사에 메일 하나로 계정을 회수하고 계약 해지하는 게 당연한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계약서에 수당퇴물림 제도를 만들어 MC가 렌탈고객을 영업하여 진행되다가 고객이 1년 이내에 고객의 상황 변경이나 변심으로 인해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받고 해당 MC에게는 렌탈유지를 못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근거로 수당퇴물림을 하고 장려수당까지 줬다가 빼앗아 갑니다

또한 회사는 조직장들을 통하여 하루 정해진 표준활동을 강요하며 모니터링하고 한 달 중 계정의 처리율을 강제하고 감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점검에 대해 지원은 하지 않고 규칙을 정하며 매월 영업 할당량을 주어 조직장을 통하여 영업압박을 하고 매월 3회나 4회 미팅 참석을 강요하고 허들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어 노동자 아닌 노동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피콜 점수제 시행으로 수수료를 점수에 따라 차감지급하고 있고 영업수수료도 고객프로모션으로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을 드리지만, MC의 수수료는 100%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매월 필터 자재 관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자재에 이상이 생기면 자재 비용까지도 수수료에서 탕감합니다. 이 경우를 보아도 회사는 MC를 특수고용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노동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본인들 자가용으로 점검하며 유지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경정비 비용 주차비 등도 본인 부담입니다. 점검에 필요한 유니폼 점검도구 등도 MC가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MC에게 해줄 수 있는 복지 제도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최근에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현재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문점검원은 회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관리하는 조직장의 갑질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체 인격모독까지 당하고 있으며 조직장에 의해 생계수단인 점검계정까지 그들의 판단으로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이 회사에 이의제기하여 클레임이 발생하면 제도가 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직장을 통하여 책임져야 할 일들은 MC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해당 MC는 고객부정 VOC라 하여 CS라는 교육을 받는데 3회 교육을 받으면 MC는 자동 계약해지가 되어 퇴사를 당하여 퇴직금도 없이 생계수단을 포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준하여 기본 최소계정은 정확하게 보장하고 회사가 점검이나 영업을 위해 최대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MC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없습니다. MC 생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일을 찾아 떠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믿음 하나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회사 자체의 업무위탁계약서가 아닌 방문점검원을 회사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현재 상황에 맞는 업계의 공통 표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위수탁계약서는 업무를 강제하는 조항이 많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를 부정하는 위수탁계약서를 계속해서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결코 스스로 개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방문점검원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한 번에 쉽게 끝나는 업무해지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최소계정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표준계약서 내용을 반영하여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점검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점검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일을 하는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대우해 주고 4대 보험까지도 적용 혜택을 주면서 회사를 위해 긴 시간 일해준 대가를 주는 것이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 토론문 6

**정경희**

프리랜서 예술가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정책간담회 토론문

정경희 (연극배우)

대게가 전업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펼치니까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무대에 가려진 예술인들의 삶은 그리 녹녹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프리랜서 실태 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부당한 점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해결점을 찾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술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분야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영화, 문학, 서예, 무용, 연극, 사진 등 갈수록 예술의 분야도 더욱 다양해지고, 장르 또한 점점 세분되어 가고 있고, AI의 시대로 접어 들어가며 예술가들의 설 자리도 점차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하는 연극업종, 무대예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단체에서 연극 배우(마당극)로 활동했었습니다. 활동하다 보니 적지만 월급도 있었고, 4대 보험의 복지 형태도 나름 갖추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공모)의 형태로 예술시장이 변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잘 나가는 가수의 공연이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발표, 체험행사 등 축제의 모습도 달라지면서 전문예술단체의 공연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단체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단원은 여기저기 프리랜서로 무대를 찾아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점점 프리랜서 연극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청년 예술인들의 경우 어느 단체에 속해 활동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예술활동을 하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알바를 해가면서...

###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고용에 불안전합니다.

우선 프리랜서가 된다는 건 나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공연을 하나 올리게 되면 계약하는 곳마다 운영이 다르고, 연습 기간이 다르고 또한 출연료 또한 가지각색입니다. 계약조건이 다소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기회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당한 내용이 있더라도 무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대라도 서지 않으면 예술과 관계없는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경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두계약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공연이 끝난 뒤, 참여하거나 보통의 사례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사례비를 받을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사제관계나 선후배 관계, 안면이 있는 관계에서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 분야 대다수는 이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예술인, 단기계약 노동자는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래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은 드문 실정입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안전에 취약합니다.

요즘 들어 무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스탭이나 배우들은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보험 또한 들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면, 노조에서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지만, 예술계는 노조도 없고 보통은 인과관계로 얽혀있어서 정당하게 사례에 대한 요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서 예술인 대부분은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개인 가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입은 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부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머니 사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고용을 받는 대상자는 을의 입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 또한 단기고용을 하든 예술강사를 하든 심사대상이 되든 을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학교 예술강사들도 프리랜서인데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지시를 받을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공모사업을 통해 공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어야 사업(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인터뷰심사를 거치는데 인터뷰 심사에서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인권을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당한 경우나 언어폭력을 당하더라도 그냥 꺾 눌러 참아야만 합니다. 속으로는 부당함에 큰소리로 맞서고 문을 박차고 나오고 싶지만,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사업공모를 찾고 준비해야 하므로, 아니면 소위 찍혀서 블랙리스트가 될까 봐...

그나마도 진행하던 공모사업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선정이 되더라도 1년 단기 사업들은 외줄타기 하듯 내년 기약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창작자입니다. 작품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고용이 되는 순간 (개인작업이 아닌 이상) 내가 생각하는 창작의 내용이 제작자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창작이 되고 맙니다. 내 생각의 자유로운 창작의 영역이 어느 순간 제작자의 생각에 맞게 수동적인 창작이 되고 맙니다. 창작의 권리 부분도 예술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 또한 자신만이 가진 색깔과 강점이 있음에도 연출과 극단의 취향에 의해 가려지고, 죽어있는 연기를 할 때가 허다합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최저임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연하거나 작품을 하거나 예술인마다 개런티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한 작품비, 출연비를 받는다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술전공을 하고서도 연주할 곳 출연할 곳이 없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출연하기도 합니다. 예술인들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크기도 합니다. 물론 차등은 있어야겠지만 최저도 못 받고 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신용이 없습니다.

간혹 차라리 단기간이라도 고용이 되어 예술활동을 하면 신용이라도 쌓일 텐데 홀로 작품만 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신용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시를 하거나 책을 내거나 모두 자본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창출되지 못하면 신용을 쌓을 기회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이 신용이 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조건 속에서 불안하지 않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동안은 '주는 대로 받고 적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안전하지 않아도 별일 없겠지.' '다음에 또 하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굴레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위 상황들은 공연자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모든 프리랜서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 장르 안에서 비슷한 삶을 거로 생각합니다. 전체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의 계약조건 최저임금 기준 마련
-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대책 마련
- 프리랜서 예술인의 권익보호
- 프리랜서 예술인의 기본소득 제도마련
- 프리랜서 예술인의 예술인증명이 신용이 되는 제도
-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실효성을 위한 개선방법 마련

얼마 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던 사고로 아까운 예술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예술인 산재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에 이어 ‘예술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노동자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벽이다. 라는 신문 문구를 보았습니다. ‘나는 예술인 노동자다!’ 예술인 스스로도 예술인 노동자로 살아감에 떳떳해하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 낼 수 있기를, 또한 예술을 하면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 토론문 7

**주승훈**

사진작가, 행사기획/진행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조사 정책간담회 토론문

주승훈 (사진작가)

존경하는 좌장님과 발제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토론자 및 관계자 분들께, 특히 토론자로 초대해 주신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나규정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전지역에서 사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주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예술 노동자로서, 저희 직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조심스럽게 올리고자 합니다.

### 1. 예술 활동의 기반, 장비 구매 비용 지원의 절실함

사진과 영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에게 '장비'는 단순히 도구가 아닌, 곧 생산성과 작품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노동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자산인 장비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저희는 카메라, 렌즈, 조명, 컴퓨터 등의 고가 장비를 전적으로 본인의 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카메라 한 대와 필수 렌즈를 갖추는 데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초기 진입 장벽을 높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장비로 교체해야 하는 주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부디, 이러한 장비 구매 비용을 예술 활동 필수 경비로 인정하고, **저리 대출 지원이나 장비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실적인 구매 보조금** 등의 형태로 프리랜서 작가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행사 기획/진행을 통해 사진의 쓸모가 있는 환경에서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려 하는 게 현실입니다.

### 2.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전시 경험 축적 및 노하우 공유의 필요성

프리랜서 예술인으로서 안정적인 사회적 보호와 권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진전 참여 또는 개인전 개최 경험 등 실질적인 예술 활동 이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리랜서 작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업 촬영(행사, 제품, 인물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순수 예술 작업이나 전시 기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시 공간대여 비용, 인화 및 액자 제작 비용 등은 상업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사진·영상 작가들을 위해 **공공 갤러리 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전시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더불어, **단체/개인 사진전 개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실질적인 준비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 증명 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준비 사항**을 안내하는 교육/행사를 병행하여 작가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3. 후속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FGI 개최 제언 (당사자 섭외 확대 방안 포함)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대전지역 내 수많은 사진 및 영상 작가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지역의 사진 및 영상 작가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섭외하여 심층적인 **\*\*간담회 (Roundtable)**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다양한 당사자가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섭외:**대전에서 열리는 사진전, 예술전 등 현장에서 **QR코드를 활용**하여 작가 본인의 DB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섭외:**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진(인물, 풍경, 행사 등) 관련 계정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인플루언서** 또한 '사진작가'의 범주로 폭넓게 지칭하여 정책 당사자에 포함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숫자로 집계할 수 없는 작가들의 구체적인 고충과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대전의 사진작가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예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때, 대전의 문화적 자산 역시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한겨울에도 뽕뽕 얼어 어려운 환경이 아닌, 따스하게 예술하고 사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일시** 2025. 9. 30.(화) 15:00  
**장소**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3층)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 I 행사개요

□ 일시 : 2025년 9월 30일 (화) 15:00-17:00

□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3층)

작 장	방진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발제자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 ■ 주제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현장발언	김정하   방송작가(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자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정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대전본부 사무국장
	김선재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조사원
	이인규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장

## II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5:05~15:20	05'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
15:20~15:50	30'	실태조사 결과보고	발제자
15:50~16:40	50'	지정토론	토론자
16:40~16:55	15'	종합토론 및 정리	좌장
16:55~17:00	05'	폐회	사회자

2025년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 현장발언 1

[간단한 자기 소개]

2001년 대전 지상파 라디오에서 첫 방송작가 생활 시작  
2025년 현재, 24년 동안 3개의 지상파TV, 라디오, 정부산하 케이블TV에서 일함

[프리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급여']

▲ 고용불안

-계약서 없이 일하던 2018년의 경우. 10년째 일하던 라디오프로그램에 새로운 아나운서가 투입되면서, 친분이 있는 다른 작가와 일을 하겠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당시 비일비재한 현실이었음.

-지인의 경우, 20년간 한 방송국에서 일했지만, 방송국의 개편에 따라 다른 작가를 투입하기로 하며 해고를 통보. 통보 후 한 달 만에 일자리를 잃음. 물론, 퇴직금 없음.

-이런 현실 앞에 누가 '프리랜서 하라 했냐.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하지만.

방송작가의 경우 공채에 따른 정규직이 없음. 한때 실시하기도 했었지만, 수시로 생겨나는 프로그램에 맞춰 어울리는 작가를 찾고, 자신과 호흡이 맞는 작가를 찾겠다는 정규직 피디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 작가'는 사라짐. 방송작가를 하고 싶다면 평생 '프리랜서'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불합리한 '급여 현실'

1. 원고료 인상은 사측이 마음 내킬 때!

- 제가 일하는 방송국과 프로그램은 거의 10년 만인 2025년에 원고료 20% 인상

평균 1년에 2% 인상이면 적당한 게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있어 온 물가인상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보상적 임금인상으로는 생활하기 힘들.

- 지인의 경우, 20년 작가 생활 중 단 한 차례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방송국도 있음. 이런 방송국의 경우 연차별 임금 테이블이 따로 있어서 연차가 쌓이면 임금은 높아지지만, 임금 테이블 자체가 20년 전 기준.

- 20년 차가 넘는 라디오작가의 경우. 데일리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인들처럼 일하고 매일 출근을 하지만, 월 급여 200만 원도 안 되는 현실. 라디오의 경우, 매일 출근해야 하므로 투잡도 어려움.

## 2. 투잡은 기본으로 해야 맞춰지는 최저임금!

- 제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세금 전 160

생활을 위해서는 투잡은 기본. 문제는 투잡을 할 경우, 주중,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 일을 2배로 늘리기에는 24시간이 모자라 서브 격인 프로그램을 맡고, 겨우 250 안팎을 맞출 수 있음. 결국, 더 벌고 싶다면 사람을 갈아 넣어야 함.

- 하지만 최근 지역 지상파 방송국 제작 규모 축소로 최저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지는 경우도 태반
- 물론, 서울은 지역보다 단가가 더 좋음.
- 최근 2년 새, 상시 근무하는 초임 작가의 경우 최저임금을 맞춰주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N 년 차 선배들보다 급여 조건이 훨씬 나은 경우가 비일비재

## 3. 시즌제의 문제

시대를 반영하는 아이템으로 15편 안팎의 제작을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시즌제 프로그램. 방송국에서는 광고도 잘 붙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선호도가 있음.

작가들에게도 한 달에 3백 안팎의 수입을 맞춰주며 근 5~6달 정도 한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게 만들. 하지만 실제 급여 기간은 3~4달 정도임. 나머지 1~2달은 기획 기간으로 이 기간에 기획료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다고 해도 방송되는 시기의 원고료 50%만 지급하는 때도 흔함. 그리하여 총금액을 따져보면 투잡 평균 수입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

## 4. 저작권의 문제

지역방송사의 경우 '재방료' 및 '2차저작물 (유튜브 등)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없는 경우가 태반. 문체부의 현장 실태조사 필요.

### ▲ 유명무실 '계약서'

1. 2020년,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에서 생애 첫 계약서 작성.

-방송작가용이 아닌, (방송스태프 전체를 포함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였음.  
-사용자 편의대로 바꿔쓴 ‘표준업무위탁계약서’였고, 내용도 ‘업무위탁’ 즉 프리랜서 계약서였음에도 일주일에 5일,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퇴근을 강요.

(투잡을 시작하면서 일을 그만뒀지만, 지금도 상근을 강요하는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확실한 현장조사와 개선 명령이 필요함)

-지금 일하는 지역 지상파에서는 2022년 첫 계약서 작성. 그 이후 1년씩 연장하다, 2024년부터는 계약서 쓰지 않고 2년째 지내고 있음.

-계약서가 있을 경우, 1년 혹은 2년 계약으로 그 기간만큼 일자리는 보장받으나, 계약에 따라 기간이 끝나면 법에 따라 일자리를 잃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음. 지역 방송작가의 경우 일자리가 많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음.

-계약서가 없을 경우, 언제 프로그램이 없어져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다른 작가로 교체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

## [필요한 제도]

### ▲ 고용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 필요

2020년쯤 시작된 ‘프리랜서 고용보험’ 제도

-현재 4년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한 달 치 원고료를 받을 때마다 ‘하루’ 일하는 ‘단기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이 들어감. 원고를 넘기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왜 노무제공 일수가 ‘1일’인지 모르겠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 프리랜서의 현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함.

### ▲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

현재도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많다. 그중에서도 젊은 예술인들의 지원은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 진입 초기 장벽을 생각하면 마땅한 지원이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수요가 줄어드는 중견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평생 해오던 일이고 출구가 없다는 점에서, 젊은 예술인들만큼이나 현실이 절박하다.

### [보고서 완독 후기]

-프리랜서의 개념 정리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음.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게 정리돼, 더 다양해질 미래 프리랜서 직업군의 보호와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라봄.

-또한, 프리랜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 좋았음. 다른 프리랜서 직군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음.

-국외 프리랜서 정책 사례를 보며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서 좋았음



2025년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 토론문 1

## 계약은 프리하지만 삶에서는 어느 것도 프리하지 않은 노동자

“자유를 빌려 쓴 청년의 땀”

오늘날 노동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인 직무 중심의 고용관계는 해체되고, 독립적 과업 단위로 노동이 분절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노동 형태가 바로 ‘프리랜서’다.

프리랜서는 가사·요양·돌봄과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특히 청년층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다양한 과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듯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회적 안전망도, 공정한 계약도, 안정적인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구속된 자유’에 불과하다. 바로 이 역설적 현실이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다.

“계약의 자유가 너희를 고통으로 인도하리라.”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만 자유로울 뿐, 실제 노동과정 전반은 사용자나 플랫폼의 요구에 종속되어 있다. 이 점에서 프리랜서는 오히려 ‘자유’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집단일 수 있다. 노동의 위험과 비용은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반면,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기업과 시장에 귀속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의 책임을 지면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결국 자유는 허상에 불과한 ‘구속된 자유’로 귀결된다.

개인화된 이익과 사회화된 비용은 단순히 프리랜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새로운 고용 형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노동법과 사회보장 체계가 여전히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는 제도의 경계 밖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를 제도의 예외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전환이 절실하다.

대전지역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소득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진다. 실태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250만 원에 불과했으며, 희망 소득과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달 소득이 10% 이상 변동한다고 답해, 생계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심층면접 사례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급여도 없고, 심지어 마이너스 급여가 발생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성과 보상뿐 아니라 위험 부담까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둘째, 계약 관행의 취약성은 불공정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서면 계약 체결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구두 계약이나 이메일, 플랫폼 약관 동의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추가 업무 요구,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보수 미지급 등 다양한 부당 사례가 발생했지만, 많은 프리랜서가 업계 내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문제 제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2.1%와 10.3%에 불과했고, 많은 수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결과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질병·실업·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문제가 구조적 불안정성과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노동시간의 자율성 상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근무 시간과 자율성이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로 꼽히지만, 현실은 무한한 대기과 초과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마감에 쫓기는 영상 편집자, 영업시간 내내 매장에 대기해야 하는 헤어디자이너, 이동시간에 시달리는 강사의 사례는 ‘자유’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삶이 동화는 아니더라도 공포물이 되지 않게”

프리랜서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소득, 불공정한 계약, 사회안전망의 부재,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며 삶이 ‘공포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기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사회보험 모델을 통한 안전망 확충,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 그리고 숙련과 경력을 반영한 사회적 표준임금체계 도입이 그 핵심 과제다. 최소한 프리랜서의 삶이 동화는 아닐지라도 더 이상 공포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다.

첫째, 정기 건강검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프리랜서는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과도한 업무, 상시 대기 구조로 인해 건강 위험에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프리랜서에게는 정기 건강검진을 저비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노동력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KSK)은 프리랜서가 보험료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와 기업이 분담하는 구조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안전망 구축의 대표적 사례다. 프랑스의 임금 이동 제도(Portage Salarial) 역시 기업과 노동자 간 계약 관계를 제도화하여 프리랜서를 보호한다. 한국도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험 모델을 도입해 질병·실업·노령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공정 조항 방지가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해야 한다. 특히 마이너스 급여, 일방적 계약 해지, 불투명한 수수료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무효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방송작가·웹소설 작가·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 이는 프리랜서가 협상력의 약세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적 표준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프리랜서의 경력과 프로젝트 참여 이력을 공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숙련 수준에 걸맞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장기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시장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이 아닌 숙련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프리랜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2025년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 토론문 2

## 대전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토론편

이 보고서는 대전 지역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프리랜서 고용구조, 작업조건, 소득 수준, 직무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프리랜서의 다수가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의 불확실성, 사회보험 사각지대, 그리고 직무별 소외감과 고립감 등을 경험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AI 등 플랫폼 경제 확대가 프리랜서의 노동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직무 분화로 인한 노동의 '태스크화'와 함께 불안정 노동의 심화 현상이 뚜렷해진 상황 가운데, 조사결과 프리랜서의 직업 안전망 부재와 복지 정책 부문에서 강한 정책적 요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대상과 표본의 한계, 신 산업군 변화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 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프리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AI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 등 실질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언되었고,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양질의 프리랜서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사회적 대안 모색의 구체적 출발점으로 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프리랜서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비교적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식산업에 종사한다는 전통적 경향으로 일반적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한 회사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유동적으로 일하는 존재이기에 전통적인 노동조합운동에서도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산업변화에 따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소수의 특별한 계층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노동'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 관련 담론에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업들은 4대보험 비용, 퇴직금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

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프리랜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가 커지고 있다.

프리랜서와 함께 다루어지는 노동법 바깥의 고용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2007년에 이미 제정되었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가사·돌봄 유니온 등 활발하게 조직화되고 있다. 반면 크라우드워커로 대표되는 프리랜서는 기댈만한 법이 없고, 조직화 또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2024년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프리랜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 홀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특성상 직업은 있지만 소속감을 갖을 직장이 없기에 ‘일’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리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축적된 기반이 없기에,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프리랜서의 ‘권리’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족한 사회안전망, 기준을 알 수 없는 단가체계, 계약서의 독소조항 등 사회적 자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프리랜서는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 졸업자 중 프리랜서로 취업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는 자유로움이라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양질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는 구조적으로도 청년들의 미래 진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현직 프리랜서 1,015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로 입직하는 이들의 32.8%는 이전의 노동경험이 없었다.<sup>3)</sup> 프리랜서로 경력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프리랜서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경우, 양질의 일자리로 편입되기란 더더욱 어렵다. 때문에 ‘프리랜서’ 노동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많은 청년이 프리랜서를 진지한 미래의 선택지로 고민하는 만큼 이 노동형태를 양극화되어 있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장기적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의 형태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3) 자료: 김종진 외 (2020). <프리랜서 노무형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관련 각종 정책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존 고용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프리랜서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로서 경로를 형성하고 이에 맞는 숙련을 형성하도록 하는 지원, △ 사회보험을 프리랜서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지원 △ 임금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 직업 공동체를 형성하여 어려움을 나누고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지원 등이다.

2025년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토론문 3**

## 대전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토론편

특고·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300만 명 이상이며, 국세청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850만 명에 이르는 등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의 대전지역 프리랜서 실태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 건강권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모성 보호 소외, 공정거래법 개정에서의 제외 등 여러 노동보호법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이나 퇴직금(퇴직연금)과 같은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에도 제대로 포섭되지 않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이는 현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배송·이동노동자의 과로사 역시 이러한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가며 가정 경조사 살펴 가며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습니다~

투자금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하는 일 -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 점검관리, 고객관리~

가전방문점검 일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홍보 문구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점검·관리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기본급조차 없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감이 배정되어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가전방문점검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의 한 분야입니다. 기본급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동차가 없으면 고용조차 될 수 없습니다.

주 1회 미팅, 교육, 영업강요, 최소 80개에서 170개를 넘기지 말라는 계정 수 제한, 170개 상을 넘긴 수수료는 최저로 지급, 영업 개수에 따른 수당 차등 등 실질적인 지배개입 및 종속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거나 고객과의 갈등이 벌어지면 직원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2025년도 2분기 국내 렌탈업계 실적을 보면 상위 기업들은 평균 10% 이상의 매출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업계 1위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6.3%, 영업이익은 14.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방문점검노동자들의 땀

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건당 수수료 100원, 200원을 두고 다투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신규 영업 창출을 이유로 기존 노동자의 일감을 빼앗아 신규 노동자에게 배정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주말 내내 방문해야 합니다. 카운트되지 않는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최대 52시간 근무라는 성희롱, 성폭행, 폭언, 개물림, 낙상, 교통사고는 이들의 노동현실을 수식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했고,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내몰려 있던 방문점검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 담장을 넘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무작위 업무 배정 방지, 계약기간 자동 갱신, 계약 변경 시 동의 절차, 수수료 지급 기준 명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폭언·폭행 시 회사의 보호조치 의무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경중을 구분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합의 절차를 명시했으며, 즉시 해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전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당 수수료 체계 속에서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계약 해지, 고객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전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 등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모든 노동자 차별 없는 권리 보장법 쟁취’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오분류 문제 해결, △2027년까지 노동법원 설치 및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한 취약·사각지대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현장 노동자들의 삶 속에서 직접 검증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행 없이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큼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방문점검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표준계약서 개정·이행 점검 투쟁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4년 코웨이코디코닥 노동자들은 3년간의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고 2,6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비슷한 방문 점검직군들의 처우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투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에, 당장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현장 적용과 계정 및 최저임금 보장은 필수적입니다. 지난 정부에 만들어지다 보니 표준계약서 안에 핵심요구인 ‘계정갑질근절, 최소계정보장, 최저임금 보장’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방문점검노동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및 현장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특수 고용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누군가는 불안정한 미래 위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자,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관심과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 토론문 4

## 대전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토론문

우선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와 좌장을 맡아주신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의 내용과 같이 프리랜서 노동자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해 주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님과 이찬우 정책국장님께도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대전광역시장에게는 프리랜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실태조사를 비롯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대전시와 시장이 우리 지역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독립노동자) 실태 연구보고서에 대해 동의하는 점과 제안하는 점을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과 보고를 위해 우리 지역 프리랜서분들을 직간접으로 만나며 피부로 느낀 점에 기반하오니, 조사원 입장의 토론으로 감안하고 들어주시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공감하며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첫째로 프리랜서라는 개념과 범위는 이제 하나의 통일된 단어로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가짜 3.3노동자, 독립노동자 등. 이미 한 범주로 묶기에도 서로 특성과 형태가 너무나 다른 여러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도 그 일하는 형태가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전면에 등장한 것도 어느

덧 30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비정규직보다 더 사각지대가 많은 프리랜서 노동이 무시하지 못할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외주화하여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자본의 요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담보가 결합된 결과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다르게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매우 더디게 정비되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언은 따로 후반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설문조사 분석 내용에도 매우 공감이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노동의 가장 취약점과 그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점은 소득 불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월 0원 수입을 넘어 마이너스 수입까지 가능한 이들의 소득 형태는 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인생을 설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보장이 미비한 현실은 이들의 소득 불안정을 더욱 극대화하여, 소득 절벽과 실업 공포를 더욱 부추기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노동자가 고령이 될수록 생계의 막막함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노동의 과정에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더라도 구제받는 방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공식적인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업계에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33.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제에도 대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소득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제1의 과제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계약과 소득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최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를 권장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인 영역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 내용 중 세 가지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본 연구는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토론자로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책 기조의 전환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사각지대가 형성된 근본적 원인은 자본과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는 속도가 현격히 느려서 그 격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법적 제도적 공백 상태에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내던져진 형국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보조적인 정책은 물론 그 자체로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으나,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대전시에는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조례와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배분된 예산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은 정책 효능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프리랜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일을 과업 단위로 분해하고 해체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자본과 기업의 처지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바, 최대한 노동자들을 분할해서 교섭 협상력을 낮추고,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자체 처지에서는 현재 너무나 다양하게 나누어진 프리랜서 노동자를 최대한 결집하여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기관을 지원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소극적인 보조자 지원자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인 조직자 대변자가 되어 우리 지역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의회 역시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6조(실태조사) 등을 개정하여 현재 ‘조사할 수 있다’라는 권고조항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가 지방 행정의 정책 의지를 견인하고 시민의 노동권 보장에 수호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더불어 현재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실태조사)에 ‘시장은 실태분석과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의무를 방기하고 전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의회는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을 적극 감시하고 감독하여, 시와 시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견인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서는 노동조합과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프리랜서 노동자는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고 쉽게 고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역시 자본의 요구에 따라 파편화된 노동의 형태와 깊이 관련이 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노동자는 동료와 협업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으로서 일면 자율적인 노동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립과 자기 착취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기억 기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능 강화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로 발전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나,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노동자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은 그 특성상 중간지원 조직만으로 정책 효능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상술된 바와 같이 각자 일하는 영역이 집 또는 개인공간 아니면 공공장소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한 장소에 모으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역시 이들이 일하는 시간 자체가 천차만별이라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센터 설립이나 중간지원 방식 문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하드웨어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조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느슨한 형태일지언정 각자가 한 울타리 안에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고충을 터놓을 수 있는 영역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민간과 노동조합의 조직과 역량 투여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래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조직이 가지는 소프트 파워에 이동노동자센터를 비롯한 지원센터의 하드웨어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지역 기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발제에 대한 세 가지 동의 의견과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만나본 우리 지역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상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젊은 층에 속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몇 년 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이 너무 고되어 퇴근 후에는 그저 동영상 몇 편을 보다가 잠에 드는 일상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장년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당장의 생계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상에 불안감은 이미 내면화되었으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나중에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 막막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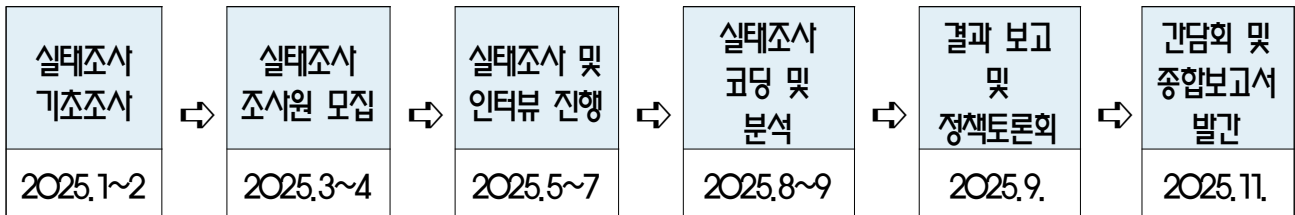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불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이웃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불안이라는 것은 고립되고 혼자 있을수록 한없이 커지고, 함께하고 연대할수록 없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함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굳세게 손잡는 연대의 힘은 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토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경과보고

## □ 사업경과

- 설문조사 사전 조사 및 기획 : 1월~2월
- 설문조사 기초조사 : 2월~3월
- 길잡이(조사원) 모집 및 교육 : 3월~4월
- 설문조사 기간 : 5~7월
- 설문 분석 : 7~8월
- 결과 보고 및 정책토론회 : 9월
- 정책간담회 및 종합보고서 발간 : 11월
- 평가회의 : 11월



## □ 설문조사 기초조사(1월~4월)

- 대전지역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기획
- 설문조사 기초조사 및 사전 심층면접
-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 작성
- 실태조사 온·오프라인 설문지 작성

## □ 실태조사 조사원 모집 및 교육(4~5월)

-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길잡이 모집 및 교육
-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완성
-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온·오프라인 동시 실시

## □ 직종별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심층면접(5~7월)

- 분야별 직종별 27명 개별면접

조사대상 범위

분야	직군
IT/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인	웹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예
문화/예술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체육/건강/뷰티	트레이너, 운동코치, 미용사, 메이크업, 피부관리사, 물리치료사
엔터/미디어/크리에이터	웹툰, 웹소설, 인터넷방송인(유튜버 등), 출판 영상편집, 독립PD, 사회자, 방송작가, 사진작가
교육/강의/컨설팅	과외,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강사 인권/노동 교육강사, 시민대학 등 교양강사 등
운송/배달	배달대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개인택시 등
가사/요양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	가전제품렌탈관리 등
금융/자산관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부동산 중개사 등
관광	여행가이드, 관광버스 기사 등
전문직	통/번역, 상담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8~9월)

-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설문조사 온라인 515명, 오프라인 13명, 심층면접 27명 완료

2025 대전지역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구 분	노동자
온라인 노동환경 실태조사	515명
오프라인 노동환경 실태조사	13명
프리랜서(독립노동자) 노동환경 심층면접	직종별 27명(개별면접)

- 설문조사 코딩 및 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9월)

- 일시 및 장소

**2025년 9월 30일(화) 15:00 | 대전시의회 소통실(3층)**

프리랜서 정책간담회 및 실태조사 종합보고서(10~11월)

- 일시 및 장소

**2025년 11월 27일(목) 15:00 | 대전노동권익센터 규유실**

- 종합보고서 완성 및 평가